시 보

선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2094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3년 1월 9일 월요일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486호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변경) 고시 ·····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3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6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4호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등록말소 고시 ····· 1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5호 도로구역(광역시도 55호선)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대1-14호선, 대2-5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1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6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1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7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 ····· 16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8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23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28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72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73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389호 2023년 인천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 7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8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 8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8호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9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0호 일반수도사업인가[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2단계)] 열람 공고 ····· 10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 10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5호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10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8호 특정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사실 및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11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0호 도시계획시설(장미근린공원 2, 3단계)사업 공사완료 공고 ····· 11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3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11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공고 ····· 12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6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공고 ····· 121

회람								

인천광역시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공보관실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7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12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8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12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3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2-116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 12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39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12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40호 도시계획시설(산밑말근린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 12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4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안) 공고·열람 ····· 12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43호 인천광역시 청원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13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45호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 14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46호 2023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 14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48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 14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4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151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3-2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152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3-1호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55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3-2호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162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3-3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74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3-2호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3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486호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변경)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장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변경없음)

- 승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방류 수질기준 초과 및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 승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통해 수질환경 개선 및 사회기반시설 확보로 지역개발 활성화 도모
- 상부 공원화 등 주민친화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

2. 공사개요(변경)

- 위치 : 인천시 연수구 능허대로 484(동춘동 947번지)(변경없음)
- 공사기간(변경)
  - 당초 : 2023년 ~ 2028년(예정)
  - 변경 : 2023년 ~ 2031년(예정)

❍ 총사업비(변경)

- 당초 : 2,980억원(추정)

- 변경 : 3,884억원(추정)

❍ 공사내용(변경)

- 당초 :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25만㎥/일

- 변경 :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27만㎥/일

3. 시 행 자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변경없음)

4. 공사수행계획

- 입찰방법 :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

- 낙찰자결정방법 : 가중치기준방식

5. 연차별 재원조달 및 시행계획

❍ 재원조달(변경)

- 당초 : 2,980억원(국비155 지방비2,574 원인자251)

- 변경 : 3,884억원(국비456 지방비2,950 원인자478)

❍ 연차별 투자 및 시행계획

- 사업 시행 기간의 예산 범위에 따라 연차별 시행

※ 국비지원 시기 등 재원조달계획 환경부와 별도 협의

6.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 인천환경공단에서 전담조직을 활용한 유지관리

7. 환경보전계획

❍ 설계 시 별도 수립할 계획

8. 기대효과

❍ 승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로 연안수질 오염예방과 개선을 통해 자연환경 보전 및 안정적인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9. 문의처

❍ 인천광역시 환경국 하수과(032-440-370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3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고 제2020-279(2020.7.13.)호로 공공청사를 결정하고 인고 제2021-165(2021.6.7.)호로 실시 계획 인가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인천소방학교)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02), 인천광역시 강화군청(도시개발과, 032-930-319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01. 09.

인 천 광 역 시 장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 설 의 종 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	공공청사	인 천 소방학교	강화군 인화리 528-4번지 일원	29,964	감)30	29,934	인고 제2020-279호 (2020.7.13.)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인 천 소방학교	● 면적 : 29,964㎡→29,934㎡ (감30㎡)	●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감소

□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 (기정)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206-1번지 일원

○ (변경)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528-4번지 일원

※ (변경사유)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 변경(위치 동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인천소방학교)

○ 명칭: 인천소방학교 이전 건립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면적: (기정) 29,964㎡ ⇒ (변경) 29,934㎡(감30㎡)

※ (변경사유) 지적측량 성과 반영

○ 규모

- (기정) 본관동(주1동), 옥내훈련장(주2동), 수난구조훈련장/구급교육센터(주3동), 소방종합훈련탑(주4동), 관사 및 생활관(주5동), 후생관(주6동), 관리시설(주7동), 경비실(부1동)
- (변경) 본관동/수난구조훈련장(구급교육센터)/생활관 및 후생관(1동), 관사동(1동), 소방종합훈련탑(1동), 관리시설(1동), 기타시설(1동)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장(소방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5. 사업기간

○ (기정) 2021. 6. 7. ~ 2023. 12. 31.

○ (변경) 2021. 6. 7.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구분		행정구역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면	리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합 계				기정			605,954	29,964			
				변경			29,934	29,934			
1	기정	양사면	인화리	산182		임	9,818	5,869	유**	김포군 **면 **로**번길 **	70/1485
									이**	경기도 **시 **구 **로 **, **동 **호	283/1485
									이**	서울특별시 **구 **로 **길 **, **동 **호	283/1485
									이**	서울특별시 **구 **로 **, **동 **호	283/1485
									이**	서울특별시 **구 **로 **길 **, **동 **호	283/1485
									이**	서울특별시 **구 **로 **길 **, **동 **호	283/1485
	변경	양사면	인화리	528	2	임	5,766	5,766	인 천 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2	기정	양사면	인화리	산186	4	임	1,279	1,279	김**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동)	1/2
									심**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층(**동)	1/2
	변경	양사면	인화리	528	3	임	1,244	1,244	인 천 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3	기정	양사면	인화리	산206	1	임	594,857	17,615	인 천 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변경	양사면	인화리	528	4	임	22,924	22,924	인 천 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1. 기 실시계획인가 고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함

2.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 중 협의기관 및 부서의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반드시 이행하여 함.

3.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승인·신고·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4. 기타 공익 및 민원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인가권자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 지시할 수 있으며, 위 인가조건의 미 이행 등 기타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 할 경우는 인가권자가 동 인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4호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등록말소 고시

「문화재보호법」제58조제1항 및 제74조제3항,「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9조제1항 및 동 조례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등록말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9일

인천광역시장

1. 고시명 :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등록말소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량	소유자
자유공원 플라타너스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1가 자유공원 내	1주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말소 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시 등록문화재 등록요건 미비

3. 말소일자 : 시보 고시일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9층(구월동)

○ 전화 : (032)440-4474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5호

도로구역(광역시도 55호선)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대1-14호선, 대2-5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광역시도 55호선[사업명: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개량) 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1. 9.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 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km)
기정	광역시도	55호선	-	남동구 만수동 1110-1번지 일원	15,475.1	만수동 990-1	만수동 1006-4	만수동	0.515
변경	광역시도	55호선	-	남동구 만수동 1110-1번지 일원	15,565.7	만수동 990-1	만수동 1006-4	만수동	0.515

○ 도로구역 결정 사유(변경)

- 도로구역 결정 고시 면적과 토지조서 합계 면적의 불일치 오류에 대한 정정

○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2020. 3.23. ~ 2023.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없음): 게재 생략

○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3) 종합건설본부(토목부 ☎032-440-5206)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4)

2. 실시계획인가(변경 없음)

○ **사업시행지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377-2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대1-14호선, 대2-118호선)사업
- 명칭: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개량)공사

○ **면적 및 규모(변경 없음)**

- 연장(L)=515m, 폭(B)=22m→30m

○ **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장 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2020. 3.23. ~ 2023.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게재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게재 생략

3. 지형도면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6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63호(2022. 6. 13.)로 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따라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2023. 1. 9.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정사유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63호(2022. 6. 13.)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내용 중 일부 오기 사항(주거・상업비율) 및 누락분(도로 결정 조서), 결정도 상에 착오로 작성된 일부 오기 사항[(도시계획시설 환원사항(도로 가각)] 정정

※ 정정고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63(2022.6.13.)호 내용과 동일함.

2. 정정사항

가.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1) 주안11구역

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및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기정) 재개발사업(주거:상업 비율 = 50% : 50% 적용)

정정) 재개발사업(주거:상업 비율 = 70% : 30% 적용)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연번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1	기정	소로	1	가	10	국지도로	61	대1-1	중2-3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부곡2길 (기점 도로 가각부 조정)
	변경	소로	1	가	10	국지도로	61	대1-1	중2-3	일반 도로		인고10-139 (10.05.24)	
2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523	중2-4	대1-1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종점 도로 가각부 조정)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523	중2-4	대1-1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3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60	대1-1	중2-3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지구외 (기점 도로 가각부 조정)
	변경	소로	3	7	6	국지도로	60	대1-1	중2-3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4	기정	소로	3	33	6	국지도로	54	중2-6	대1-12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지구외 (종점 도로 가각부 조정)
	변경	소로	3	33	6	국지도로	54	중2-6	대1-12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5	기정	소로	3	38	6	국지도로	237	대1-1	중1-4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기점 도로 가각부 조정)
	변경	소로	3	38	6	국지도로	237	대1-1	중1-4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6	기정	소로	3	39	6	국지도로	319	대1-1	대3-173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기점 도로 가각부 조정)
	변경	소로	3	39	6	국지도로	319	대1-1	대3-173	일반 도로		인고22-163 (22.06.13)	
7	신설	소로	3	사	6	국지도로	70	대1-1	중2-6	일반 도로		-	지구외 (기점 도로 가각부 조정)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가호선	소로1-가호선	· 도로가각부 조정	· 촉진계획 변경(2022.06.13.)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로가각부 일부 변경
소로2-1호선	소로2-1호선	· 도로가각부 조정	· 촉진구역에 해제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환원사항 정정 (도로가각부 일부 변경)
소로3-7호선	소로3-7호선	· 도로가각부 조정	· 촉진구역에 해제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환원사항 정정 (도로가각부 일부 변경)
소로3-33호선	소로3-33호선	· 도로가각부 조정	· 촉진구역에 해제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환원사항 정정 (도로가각부 일부 변경)
소로3-38호선	소로3-38호선	· 도로가각부 조정	· 촉진구역에 해제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환원사항 정정 (도로가각부 일부 변경)
소로3-39호선	소로3-39호선	· 도로가각부 조정	· 촉진구역에 해제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환원사항(도로가각부 일부) 및 지적 불부합부 선형 정정
-	소로3-사호선	· 도로노선 번호 부여 - B=6m, L=70m	· 누락된 노선에 대한 신규노선번호 부여(지구외) · 촉진구역에 해제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환원사항 정정 (도로가각부 일부 변경)

※ 소로 3-사호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63(2022.6.13.)호로 고시된 내용중 지형도면에는 반영되었으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누락된 부분 반영

3.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관련사항은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4. 지형도면: 게재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5.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생정책과 (☎032-440-4468),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과(☎032-880-7947)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으며, 토지e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7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

1.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91호(2008.5.26)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139호(2010.5.2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75호(2011.10.3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54호(2013.9.3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59호(2013.9.3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53호(2014.7.1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255호(2015.9.3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17호(2016.2.1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41호(2016.3.1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40호(2017.3.1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24호(2017.6.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37호(2018.2.19.),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63호(2022.6.13.), 제2023-6호(2023.1.9.)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된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면(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5.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97,140.9	-	997,140.9	100.0	
주거용지		591,249.1	감) 14.8	591,234.3	59.3	
상업/업무용지		85,406.0	-	85,406.0	8.6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317,175.9	-	317,175.9	31.8	
	공공청사	910.7	-	910.7	0.1	
	학 교	35,280.2	-	35,280.2	3.5	
	문화시설	4,000.0	-	4,000.0	0.4	
	공 원	51,534.4	-	51,534.4	5.2	
	녹 지	4,775.2	-	4,775.2	0.5	
	시 장	3,541.8	-	3,541.8	0.4	
	미래공공용지	2,892.8	-	2,892.8	0.3	
	주 차 장	1,850.0	-	1,850.0	0.2	
	도 로	212,390.8	-	212,390.8	21.2	
기타 시설 용지	소 계	3,309.9	증) 14.8	3,324.70	0.3	
	유치원	949.1	-	949.1	0.1	
	종교용지	2,360.8	증) 14.8	2,375.60	0.2	

주) 공원 외 도로 확폭구간 면적은2,287㎡, 공원시설과 중복결정한 저류시설 7,682㎡, 문화시설 1,340㎡은 미 표기
주) 주안1구역 종교시설 용지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임
주) 도로 구성비 오기정정(21.3% →21.2%)

2)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5) 교통계획(변경없음)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지구 계획(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10)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없음)

11)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1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변경없음)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

○ 기정

구분	사업기간			해당구역	비고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2015	2017이후	2020	미추3-1구역, 미추5-1구역	총 3개 구역
			2022	도시개발1구역	
2단계	2018	2020이후	2023	미추5-3구역, 주안1구역	총 2개 구역
3단계	2021	2023이후	2025	미추1구역, 미추2-1, 2-2, 2-3, 2-4, 2-5, 4-1, 4-2, 4-3, 4-4, 5-2, 5-4, 5-5, 5-6, 6-1, 6-2, 6-3, 7-1, 7-2, 7-3, 7-4, 7-5, 8, A-1, C구역 및 주안11구역	총 26개 구역

○ 변경

구 분	사업기간			해당구역	비고
	추진시기	이주시기	완료시기		
1단계	2015	2017이후	2020	미추3-1구역, 미추5-1구역	총 3개 구역
			2024	도시개발1구역	
2단계	2018	2020이후	2023	미추5-3구역, 주안1구역	총 2개 구역
3단계	2021	2023이후	2025	미추1구역, 미추2-1, 2-2, 2-3, 2-4, 2-5, 4-1, 4-2, 4-3, 4-4, 5-2, 5-4, 5-5, 5-6, 6-1, 6-2, 6-3, 7-1, 7-2, 7-3, 7-4, 7-5, 8, A-1, C구역 및 주안11구역	총 26개 구역

주1) 일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단계의 총량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이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 또는 해당구역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함

주2) 단계별 추진계획은 향후 각종 심의 및 행정절차,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구역별 사업시행인가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4)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변경없음)

15) 기타계획(변경없음)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1. 미추1구역(변경없음)

2. 미추8구역(변경없음)

3. 주안1구역(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29,599.9	-	129,599.9	100.0	
주거용지		105,994.5	감) 14.80	105,979.7	81.8	
상업/업무용지		-	-	-	-	
기반시설 용지	소 계	22,958.2	-	22,958.2	17.7	
	공공청사	-	-	-	-	
	학교	-	-	-	-	
	문화시설	-	-	-	-	
	공원	12,024.1	-	12,024.1	9.3	
	녹지	-	-	-	-	
	미래형 공공용지	-	-	-	-	
	도로	10,934.1	-	10,934.1	8.4	
기타용지	소 계	647.2	증) 14.8	662.0	0.5	
	의료시설	-	-	-	-	
	종교용지	647.2	증) 14.8	662.0	0.5	

나)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및 공동이용 설치계획(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주용도	건폐율	상한용적률	층 수
공동주택	105,979.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85%이하	40층이하
종교시설	662.0	종교시설	60%이하	210%이하	10층이하

※ 공동주택에 대하여 인센티브용적률(「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친환경・저에너지 녹색건축물설계 가이드라인」용적률 완화(인센티브) 항목 반영 시)을 적용하며, 사업시행인가시 사업계획반영 여부 및 이행 수준에 따라 상한용적률에 포함된 인센티브용적률이 삭감 될 수 있음

마)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바) 촉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및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변경없음)

아)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 변경 결정도서 참조

4. 미추C구역(변경없음)

5. 주안11구역(변경없음)

6. 도시개발1구역(변경없음)

7. 미추A-1구역(변경없음)

8. 미추2-1구역(변경없음)

9. 미추2-2구역(변경없음)

10. 미추2-3구역(변경없음)

11. 미추2-4구역(변경없음)

12. 미추2-5구역(변경없음)

13. 미추3-1구역(변경없음)

14. 미추4-1구역(변경없음)

15. 미추4-2구역(변경없음)

16. 미추4-3구역(변경없음)

17. 미추4-4구역(변경없음)

18. 미추5-1구역(변경없음)

19. 미추5-2구역(변경없음)

20. 미추5-3구역(변경없음)

21. 미추5-4구역(변경없음)

22. 미추5-5구역(변경없음)

23. 미추5-6구역(변경없음)

24. 미추6-1구역(변경없음)

25. 미추6-2구역(변경없음)

26. 미추6-3구역(변경없음)

27. 미추7-1구역(변경없음)

28. 미추7-2구역(변경없음)

29. 미추7-3구역(변경없음)

30. 미추7-4구역(변경없음)

31. 미추7-5구역(변경없음)

17)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변경없음)

18) 특성화계획(변경없음)

19)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6. 관계서류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 첨부된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생정책과 (☎ 032-440-4468),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과 (☎ 032-880-7947)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으며, 토지e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8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59호(2013. 9. 3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41호(2016. 3. 1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203호(2017. 8. 2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563호(2022. 1. 3.)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1. 9.

인 천 광 역 시 장

Ⅰ.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도시개발1구역 주변 개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합한 의료시설/업무/판매 등 복합기능을 재검토하여 배후 주거기능을 재도입한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도심공동화 방지 및 침체된 인천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4동 454-4번지 일원

○ 면적: 26,168㎡

4. 시행자(변경 없음)

○ 시행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5. 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3. 9. 30. ~ 2022.12.31.

○ (변경) 2013. 9. 30. ~ 2024.12.31.

6. 시행방식(변경 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 따로 붙임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인천광역시청(재생정책과, ☎ 032-440-446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재생과, ☎ 032-880-7947)

○ 공람내용: 실시계획(변경)

○ 관계도서: 공람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 없음)

○ 게재생략

10.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e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없음)

가.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44	40-43	주간선 도로	746 (160)	대1-1	광3-7	일반 도로	인고95-13 (95.01.27)	미추홀 대로
변경	광로	3	44	32~45	주간선 도로	746 (160)	대5-1	광7-7	일반 도로	인고95-13 (95.01.27)	미추홀 대로
기정	대로	1	1	35-39	주간선 도로	12,140 (172)	광3-1	부천 시계	일반 도로	인고95-13 (95.01.27)	경인로
기정	중로	1	660	20	집산 도로	305 (147)	광3-44	대1-1	일반 도로	인고10-139 (10.5.24)	주안 초등길

주) 연장( )는 사업대상지내 구간 길이임

②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3-44호선	광로3-44호선	· 선형변경 및 폭원 변경 - B : 40~43m ⇒ 32~45m	·미추10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미반영된 미추홀대로 변경사항 반영 및 폭원오기 정정

2) 도시공간시설

가) 공원(변경)

①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공원	소공원	주안4동 454-9 일원	1,340	-	1,340	인고10-139 (10.05.24)	문화시설과 중복결정
변경			문화공원						

②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공원	· 공원종류 변경 - 소공원 → 문화공원	· 문화시설(지하 중복결정)과 연계를 고려한 공원의 종류 변경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인천광역시 고시 2022-163호(2022.06.13.)]반영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24차) 및 실시계획(25차)를 변경 승인 및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 개발계획 주요 변경내용

○ 영종하늘도시 및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03. 8. 11 ~ 2022. 12. 31
- 변경 : 2003. 8. 11 ~ 2023. 12. 31

○ 확정측량성과 반영

◈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구 분	시행기간(당초)	시행기간(변경)	면적(㎡)	증감 (㎡)	비고
1단계	2012년 까지	2012년 까지	6,014,159.5	-	변경없음
2단계	-	-	6,609,015.7	-	변경없음
2-1단계	2014년 까지	2014년 까지	165,856.1	-	변경없음
2-2단계	2015년 까지	2015년 까지	5,396,610.4	-	변경없음
2-3단계	2016년 까지	2016년 까지	443,992.1	-	변경없음
2-4단계	2019년 까지	2019년 까지	602,557.1	-	변경없음
3단계	2022년 까지	2023년 까지	6,676,873.9	-	변경

4.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 인구수용계획【변경】

[인구수용계획(총괄)]

구 분	변경없음	비고
인구수(명)	133,629	
세대수(호)	53,553	

[인구수용 세부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세대수(호)	계획인구(인)	인구밀도(인/ha)	규모(㎡)
계	기정	4,308,790.5	100.0		53,553	133,629		
	변경	4,309,867.7	100.0		53,553	133,629		
단독주택	기정	1,414,345.8	32.8		4,400	11,091	78	
	변경	1,415,423.0	32.8		4,400	11,091	78	
일반형	기정	870,967.7	20.2		2,498	6,295	72	360
블럭형	기정	477,379.2	11.1		1,764	4,448	93	150～500
	변경	478,456.4	11.1		1,764	4,448	93	150～500
휴양형	기정	65,998.9	1.5		138	348	53	500
공동주택	기정	2,757,710.9	64.0	(100.0)	45,427	113,148	410	
저층	기정	262,430.2	6.1	(9.5)	1,537	3,873	148	
중층	기정	708,414.6	16.4	(25.7)	10,003	25,205	355	
고층	기정	1,786,866.1	41.5	(64.8)	33,887	84,070	470	
주상복합	기정	136,733.8	3.2		2,767	6,973	510	
유보지	기정	-	-	-	959	2,417		

○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세대수(호)	계획인구(인)	비고
계	기정	4,308,790.5	100.0	53,553	133,629	
	변경	4,309,867.7	100.0	53,553	133,629	
단독주택	기정	1,414,345.8	32.8	4,400	11,091	
	변경	1,415,423.0	32.8	4,400	11,091	
공동주택	기정	2,757,710.9	64.0	45,427	113,148	
주상복합	기정	136,733.8	3.2	2,767	6,973	
유보지	기정	-	-	959	2,417	

주) 전시 및 산업시설 유보지내에 959세대 계획

▷ 단독주택【변경】

구 분		면 적(㎡)	용적률	평균규모(㎡)	세대수	수용인구
계	기정	1,414,345.8			4,400	11,091
	변경	1,415,423.0			4,400	11,091
일반형	기정	870,967.7	100%/150%	360	2,498	6,295
블럭형	기정	477,379.2	120%	150 ～ 500	1,764	4,448
	변경	478,456.4	120%	150 ～ 500	1,764	4,448
휴양형	기정	65,998.9	120%	500	138	348

▷ 주상복합용지【변경 없음】

▷ 공동주택(저층)【변경 없음】

▷ 공동주택(중층)【변경 없음】

▷ 공동주택(고층)【변경 없음】

▷ 유보지(전시 및 산업시설)【변경 없음】

○ 임대 및 외국인 분양주택【변경 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

ㅇ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정	변경	
합 계		19,300,049.1	19,300,049.1	-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4,172,056.7	4,173,133.9	증) 1,077.2	21.6	21.6	
	공동 주택	2,757,710.9	2,757,710.9	-	14.3	14.3	
	단독 주택	1,414,345.8	1,415,423.0	증) 1,077.2	7.3	7.3	
근린생활시설용지		113,926.2	113,926.2	-	0.6	0.6	
주상복합용지		136,733.8	136,733.8	-	0.7	0.7	
상업시설용지		479,614.9	479,614.9	-	2.5	2.5	
산업물류시설용지		489,714.0	489,714.0	-	2.5	2.5	
업무시설용지	소 계	108,084.1	108,084.1	-	0.6	0.6	
	업무시설용지	97,535.6	97,535.6	-	0.5	0.5	
	유통업무시설용지	10,548.5	10,548.5	-	0.1	0.1	
관광위락시설용지	소 계	350,700.0	350,700.0	-	1.8	1.8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	215,365.0	215,365.0	-	1.1	1.1	
	문화 및 업무시설	135,335.0	135,335.0	-	0.7	0.7	
공공시설용지	소 계	10,917,132.4	10,916,055.2	감) 1,077.2	56.6	56.6	
	도로	3,213,954.2	3,213,334.0	감) 620.2	16.7	16.6	
	주차장	138,122.3	138,122.3	-	0.8	0.8	
	공원	4,328,038.2	4,328,054.0	증) 15.8	22.4	22.4	
	녹지	1,551,228.7	1,550,912.3	감) 316.4	8.1	8.0	
	공공공지	42,131.2	42,131.2	-	0.2	0.2	
	문화시설	67,580.2	67,580.2	-	0.3	0.3	
	사회복지시설	10,040.2	10,040.2	-	0.0	0.0	
	체육시설용지	88,210.0	88,210.0	-	0.5	0.5	
	광장	547,245.4	547,230.5	감) 14.9	2.8	2.8	
	학교	403,528.7	403,519.7	감) 9.0	2.1	2.1	
	변전소	6,519.7	6,519.7	-	0.0	0.0	
	복합터미널	23,513.8	23,513.8	-	0.1	0.1	
	여객자동차차고지	12,565.1	12,565.1	-	0.1	0.1	
	종교용지	22,053.1	21,920.6	감) 132.5	0.1	0.1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중앙집하장	10,499.9	10,499.9	-	0.1	0.1	
	하수종말처리장	58,485.3	58,485.3	-	0.3	0.3	
	공공청사	213,647.0	213,647.0	-	1.1	1.1	
	교육지원시설	14,911.3	14,911.3	-	0.1	0.1	
	주유소	22,259.2	22,259.2	-	0.1	0.1	
	배수지	12,705.1	12,705.1	-	0.1	0.1	
	통신시설용지	1,361.1	1,361.1	-	0.0	0.0	
	오수중계펌프장	489.0	489.0	-	0.0	0.0	
	빗물펌프장	1,851.9	1,851.9	-	0.0	0.0	
	종합의료시설	110,139.0	110,139.0	-	0.6	0.6	
	정압기	96.0	96.0	-	0.0	0.0	
	가압장	2,544.9	2,544.9	-	0.0	0.0	
	시장용지	1,548.8	1,548.8	-	0.0	0.0	
	창고시설용지	1,001.4	1,001.4	-	0.0	0.0	
	지하차도관리사무소	1,941.7	1,941.7	-	0.0	0.0	
	군사시설용지	8,402.0	8,402.0	-	0.0	0.0	
	송유시설용지	518.0	518.0	-	0.0	0.0	
유보지		2,532,087.0	2,532,087.0	-	13.1	13.1	

ㅇ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주택건설용지【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세대수(호)	계획인구(인)	인구밀도(인/ha)	규모(㎡)
계		기정	4,308,790.5	100.0		53,553	133,629		
		변경	4,309,867.7	100.0		53,553	133,629		
단독주택		기정	1,414,345.8	32.8		4,400	11,091	78	
		변경	1,415,423.0	32.8		4,400	11,091	78	
	일반형	기정	870,967.7	20.2		2,498	6,295	72	360
	블럭형	기정	477,379.2	11.1		1,764	4,448	93	150~500
		변경	478,456.4	11.1		1,764	4,448	93	150~500
	휴양형	기정	65,998.9	1.5		138	348	53	500
공동주택		기정	2,757,710.9	64.0	(100.0)	45,427	113,148	410	
	저층	기정	262,430.2	6.1	(9.5)	1,537	3,873	148	
	중층	기정	708,414.6	16.4	(25.7)	10,003	25,205	355	
	고층	기정	1,786,866.1	41.5	(64.8)	33,887	84,070	470	
주상복합		기정	136,733.8	3.2		2,767	6,973	510	
유보지		기정	-	-	-	959	2,417		

▷ 근린생활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산업(물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문화 및 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복합터미널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여객자동차차고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시장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창고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체육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유보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

ㅇ 광역접근체계【변경 없음】

ㅇ 신호교차로 및 가감속차로【변경 없음】

ㅇ 가로망계획【변경 없음】

ㅇ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계획【변경 없음】

○ 도로계획【변경】

구분	주 요 내 용	
	기 정	변 경
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1개노선(34,400.0㎡) ○ 일반도로 : 448개노선(2,942,057.0㎡) ○ 특수도로 : 308개노선(185,702.6㎡) ○ 가각 및 기타 : 51,794.6㎡	○ 자동차전용도로 : 1개노선(34,400.0㎡) ○ 일반도로 : 448개노선(2,942,057.0㎡) ○ 특수도로 : 308개노선(185,702.6㎡) ○ 가각 및 기타 : 51,174.4㎡

○ 주차장 계획【변경 없음】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 학교시설【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학교시설	기정	24개소	403,528.7	
	변경	24개소	403,519.7	확정측량결과 반영

○ 사회복지시설【변경 없음】

○ 의료시설【변경 없음】

○ 공공청사【변경 없음】

○ 문화시설【변경 없음】

○ 도서관【변경 없음】

○ 경로당【변경 없음】

○ 주유소【변경 없음】

○ 종교시설【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종교시설	기정	15개소	22,053.1	
	변경	15개소	21,920.6	확정측량결과 반영

○ 검문소【변경 없음】

○ 구립종합운동장【변경 없음】

○ 군사시설용지【변경 없음】

○ 봉안당(메모리얼파크)【변경 없음】

○ 통신시설용지【변경 없음】

○ 교육지원시설용지【변경 없음】

○ 청소년수련시설【변경 없음】

○ 복합공공시설【변경 없음】

10.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2. 용수·에너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가. 상수도계획【변경 없음】

나. 우·오수계획【변경 없음】

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계획【변경 없음】

라.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계획【변경 없음】

마. 도로관리차량보관소【변경 없음】

바. 가스공급설비(정압기) 계획【변경 없음】

사. 송유시설 부지【변경 없음】

아. 공원·녹지계획【변경】

구분	주 요 내 용	
	기 정	변 경
공원	○ 근린공원 : 38개소(3,989,478.0㎡) ○ 체육공원 : 2개소(89,610.8㎡) ○ 어린이공원 : 27개소(102,267.1㎡) ○ 소공원 : 25개소(46,682.3㎡) ○ 묘지공원 : 1개소(100,000.0㎡)	○ 근린공원 : 38개소(3,989,501.0㎡) ○ 체육공원 : 2개소(89,610.8㎡) ○ 어린이공원 : 27개소(102,259.9㎡) ○ 소공원 : 25개소(46,682.3㎡) ○ 묘지공원 : 1개소(100,000.0㎡)
녹지	○ 완충녹지 : 66개소(902,686.4㎡) ○ 경관녹지 : 6개소(421,431.2㎡) ○ 연결녹지 : 30개소(227,111.1㎡)	○ 완충녹지 : 66개소(902,612.3㎡) ○ 경관녹지 : 6개소(421,227.1㎡) ○ 연결녹지 : 30개소(227,073.0㎡)

자. 기타 기반시설【변경】

구분	주 요 내 용	
	기 정	변 경
광장	○ 교통광장 : 5개소(426,075.9㎡) ○ 일반광장 : 13개소(121,169.5㎡)	○ 교통광장 : 5개소(426,075.9㎡) ○ 일반광장 : 13개소(121,154.6㎡)
공공공지	○ 공공공지 : 19개소(42,131.2㎡)	○ 공공공지 : 19개소(42,131.2㎡)

13.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14. 재원조달계획【변경 없음】

15. 개발사업지구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7. 문화재 보호계획【변경 없음】

18. 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변경 없음】

19. 지하매설물 계획【변경 없음】

20.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변경 없음】

21. 방재계획【변경 없음】

22. 주요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3.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변경】

○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변경】: 붙임1

Ⅱ.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변경

▣ 실시계획 주요 변경내용

○ 영종하늘도시 및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03. 8. 11 ~ 2022. 12. 31
- 변경 : 2003. 8. 11 ~ 2023. 12. 31

○ 확정측량성과 반영

○ 사업시행자 대표자 변경

○ 영종2지구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공사기간 연장

◈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변경 ◈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구 분	시행기간(당초)	시행기간(변경)	면적(㎡)	증감 (㎡)	비고
1단계	2012년 까지	2012년 까지	6,014,159.5	-	변경없음
2단계	-	-	6,609,015.7	-	변경없음
2-1단계	2014년 까지	2014년 까지	165,856.1	-	변경없음
2-2단계	2015년 까지	2015년 까지	5,396,610.4	-	변경없음
2-3단계	2016년 까지	2016년 까지	443,992.1	-	변경없음
2-4단계	2019년 까지	2019년 까지	602,557.1	-	변경없음
3단계	2022년 까지	2023년 까지	6,676,873.9	-	변경

3.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변경】

가. 소요토지 확보계획【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생략(개발계획 변경 내용과 동일)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생략(개발계획 변경 내용과 동일)

다.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라. 산업(물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마.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용지 관한 계획【변경 없음】

바. 문화 및 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사. 복합터미널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아. 여객자동차차고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자. 시장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차. 창고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카. 체육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타. 유보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파. 학교(유치원)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유치원	기정	6개소	9,571.1	
	변경	6개소	9,562.1	확정측량결과 반영

하.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주 요 내 용	
	기 정	변 경
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1개노선(34,400.0㎡) ○ 일반도로 : 448개노선(2,942,057.0㎡) ○ 특수도로 : 308개노선(185,702.6㎡) ○ 가각 및 기타 : 51,794.6㎡	○ 자동차전용도로 : 1개노선(34,400.0㎡) ○ 일반도로 : 448개노선(2,942,057.0㎡) ○ 특수도로 : 308개노선(185,702.6㎡) ○ 가각 및 기타 : 51,174.4㎡
지하도로 (지하공공보도)	변경없음	
여객자동차 차고지	변경없음	
광장	○ 교통광장 : 5개소(426,075.9㎡) ○ 일반광장 : 13개소(121,169.5㎡)	○ 교통광장 : 5개소(426,075.9㎡) ○ 일반광장 : 13개소(121,154.6㎡)
공원	○ 근린공원 : 38개소(3,989,478.0㎡) ○ 체육공원 : 2개소(89,610.8㎡) ○ 어린이공원 : 27개소(102,267.1㎡) ○ 소공원 : 25개소(46,682.3㎡) ○ 묘지공원 : 1개소(100,000.0㎡)	○ 근린공원 : 38개소(3,989,501.0㎡) ○ 체육공원 : 2개소(89,610.8㎡) ○ 어린이공원 : 27개소(102,259.9㎡) ○ 소공원 : 25개소(46,682.3㎡) ○ 묘지공원 : 1개소(100,000.0㎡)
녹지	○ 완충녹지 : 66개소(902,686.4㎡) ○ 경관녹지 : 6개소(421,431.2㎡) ○ 연결녹지 : 30개소(227,111.1㎡)	○ 완충녹지 : 66개소(902,612.3㎡) ○ 경관녹지 : 6개소(421,227.1㎡) ○ 연결녹지 : 30개소(227,073.0㎡)
공공공지	변경없음	
수도공급시설	변경없음	
가스공급시설	변경없음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시설	변경없음	
전기공급시설	변경없음	
시장	변경없음	
공공청사	변경없음	
학 교	변경없음	
하수종말처리장	변경없음	
오수중계펌프장	변경없음	
빗물펌프장	변경없음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변경없음	

4. 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단계별 시행계획【변경】

구 분	시행기간(당초)	시행기간(변경)	면적(㎡)	증감 (㎡)	비고
1단계	2012년 까지	2012년 까지	6,014,159.5	-	변경없음
2단계	-	-	6,609,015.7	-	변경없음
2-1단계	2014년 까지	2014년 까지	165,856.1	-	변경없음
2-2단계	2015년 까지	2015년 까지	5,396,610.4	-	변경없음
2-3단계	2016년 까지	2016년 까지	443,992.1	-	변경없음
2-4단계	2019년 까지	2019년 까지	602,557.1	-	변경없음
3단계	2022년 까지	2023년 까지	6,676,873.9	-	변경

5.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 붙임2

6.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변경】: 붙임3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제18조 ·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 · 일반산업단지개발 ·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 영종2지구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공원조성계획 변경

7.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구분	사업시행자명칭	사업시행자주소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기정	김 현 준
			변경	이 한 준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32	이 승 우	

8. 위치도・실시계획평면도 (S=1/10,000)【변경 없음】

9. 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 도서【변경 없음】

10.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없음】

11. 개발사업 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 없음】

12.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가. 근거 규정 : 변경없음

나. 조성토지 처분방법 및 가격기준 : 변경없음

다. 처분대상자의 자격기준 : 변경없음

라. 처분 및 투기방지대책: 변경없음

마. 대금(선수금) 납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바. 준공검사전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사항 : 변경없음

사. 토지용도별 세부처분계획 : 변경

처분대상토지 구분			면적(㎡)	처분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합계			19,300.049.1	-	-	-	-
주택건설용지	소계	기정	4,288,362.7	-	-	-	-
		변경	4,287,060.1				
	단독주택용지 소계	기정	1,414,345.8	2007	실수요자	-	-
		변경	1,415,423.0				
	일반형(주거전용)		870,967.7			추첨	감정가격
	일반형(점포겸용)					경쟁입찰	주거부분 : 감정가격 비주거부분 :낙찰가격
	블럭형	기정	477,379.2			추첨 혹은 설계공모에 의한 수의계약	감정가격
		변경	478,456.4				
	휴양형		65,998.9			경쟁입찰	주거부분 : 감정가격 비주거부분 :낙찰가격
	※ 이주대책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 협의양도인 : 수의계약, 감정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공동주택용지 소계		2,757,710.9	-	-	-	-
	60㎡이하 60-85㎡ 85㎡초과			2007	실수요자	추첨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신설)	감정가격
					국가 · 지자체 · LH 지방공사 등	추첨 또는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이주대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협의양도 사업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인천지역소재업체	추첨	감정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 외국인임대, 국민임대주택용지 : 추첨 또는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근린생활시설용지		113,926.2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생활대책대상자 : 수의계약, 감정가격(기준면적 초과 : 평균낙찰가격)		
산업시설용지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내		320,334.3	2020	실수요자	추첨	조성원가 기준
					국가 ·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외		167,379.7	2008	실수요자	추첨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국가 ·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상업업무시설용지	소계		724,432.8	-	-	-	-
	상업시설용지		479,614.9	2007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업무시설용지		97,535.6		※ 생활대책대상자 : 수의계약, 감정가격(기준면적 초과 : 평균낙찰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감정가격		
	유통업무시설용지		10,548.5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외국인투자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주상복합용지		136,733.8	2007	실수요자	주거부분: 감정가격 상업부분: 낙찰가격	
관광휴게및숙박시설			215,365.0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외국인투자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문화및업무시설			135,335.0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외국인투자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처분대상토지 구분			처분대상토지 면적(㎡)	처분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공공시설용지	소계	기정	10,917,132.4	-	-	-	-
		변경	10,916,055.2				
	학교시설 계	기정	403,587.2	-	-	-	-
		변경	403,519.7				
	학교시설 유치원	기정	9,571.1	2009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변경	9,562.1				
	학교시설 초등학교		100,283.5	2009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학교시설 중학교		60,263.7	2009			
	학교시설 고등학교		147,822.4	2009	실수요자	수의계약 (경합시추점)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학교시설 외국인학교		85,588.0	2009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설립자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종교시설용지	기정	22,053.1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변경	21,920.6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변전소		6,519.7	2007	한국전력	수의계약	감정가격
	주차장용지		138,122.3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공공청사		213,647.0	2009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사회복지시설		10,040.2	2008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체육시설용지		88,210.0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유소		22,259.2	2007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또는 평균낙찰가
	종합의료시설		110,139.0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외국인투자자(의료법인) :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또는 감정가격		
	문화시설		67,580.2	2008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복합터미널		23,513.8	2008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여객자동차 차고지		12,565.1	2009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시장용지		1,548.8	2009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창고시설용지		1,001.4	2009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실수요자	제한경쟁 입찰	낙찰가격
	통신시설용지		1,361.1	2011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처 분 대 상 토 지				처분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구 분		면 적(㎡)					
공공 시설 용지	정압기		96.0	2008	도시가스 설치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송유시설용지		518.0	2012	기존시설 이용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공원	기정	4,328,038.2	준공시	관리기관	무상양여	무상양여
		변경	4,328,054.0				
	녹지	기정	1,551,228.7				
		변경	1,550,912.3				
	공공공지		42,131.2				
	광장	기정	547,245.4				
		변경	547,230.5				
	배수지		12,705.1				
	오수중계펌프장		2,340.9				
	하수종말처리장		58,485.3				
	생활폐기물자동집하 시설중앙집하장		10,499.9				
	지하차도관리 사무소		1,941.7				
	군사시설용지		8,402.0				
	도로	기정	3,213,954.2				
		변경	3,213,334.0				
	가압장		2,544.9				
	교육지원시설		14,911.3	-	환지예정자	-	환지처분
유 보 지			2,532,087.0	2009	실수요자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경쟁입찰	낙찰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13.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방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변경)【변경 없음】

14.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변경 없음】

15. 공공시설 등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변경 없음】

16.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없음】

17.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의 명세서【변경 없음】

18. 사업비 위탁 또는 신탁 계획서【해당 없음】

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 업자의 감정평가서【해당 없음】

20. 영종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 규칙 및 부담률 계산서 등【변경 없음】

▣ 관계도서 및 본 고시에 게재 생략된 부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83), 한국토지주택공사 영종단지사업부(032-717- 4317, 4305)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ㅇ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1. 산업단지의 명칭 ·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구분	사업시행자명칭	사업시행자주소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기정	김 현 준
			변경	이 한 준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32	이 승 우	

4. 사업시행방법【변경 없음】

5. 주요유치업종【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7. 재원조달계획【변경 없음】

8. 수용 · 사용할 토지 ·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변경 없음】

: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에 의함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변경】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구분	주 요 내 용	
	기 정	변 경
시행기간	2003. 8. 11 ~ 2022. 12. 31.	2003. 8. 11 ~ 2023. 12. 31.

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해당 없음】

다.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없음】

라.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변경 없음】

마.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해당 없음】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3항에 따라 건축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붙임 2>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총 계		19,300,049.1	-	19,300,049.1	100.0	100.0	
주거지역	소 계	8,133,552.9	-	8,134,750.3	42.1	42.1	
	제2종전용주거지역	1,687,449.9	증) 686.2	1,688,136.1	8.7	8.7	
	제1종일반주거지역	1,495,004.0	증) 526.1	1,495,530.1	7.7	7.7	
	제2종일반주거지역	1,880,636.7	-	1,880,636.7	9.7	9.7	
	제3종일반주거지역	2,194,907.3	-	2,194,907.3	11.4	11.4	
	준주거지역	875,555.0	감) 14.9	875,540.1	4.5	4.5	
상업지역	소 계	1,929,349.3	-	1,929,349.3	10.0	10.0	
	중심상업지역	589,607.7	-	589,607.7	3.1	3.1	
	일반상업지역	1,339,741.6	-	1,339,741.6	6.9	6.9	
공업지역	소 계	3,416,412.1	-	3,416,412.1	17.7	17.7	
	준공업지역	3,416,412.1	-	3,416,412.1	17.7	17.7	
녹지지역	소 계	5,820,734.8	감) 1,197.4	5,819,537.4	30.2	30.2	
	자연녹지지역	5,820,734.8	감) 1,197.4	5,819,537.4	30.2	30.2	

나. 용도지구 결정 【변경 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1) 교통시설【변경 없음】

①도로【변경】

ㅇ 도로총괄표【변경】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기정	757	165,706.7	3,213,954.2	202	56,167.0	957,954.3	243	47,236.7	675,030.0	312	62,034.0	1,529,175.3
		변경	757	165,706.7	3,213,334.0	202	56,167.0	957,954.3	243	47,236.7	675,030.0	312	62,034.0	1,529,175.3
자동차전용도로	소계	기정	1	2,315.0	34,400.0	-	-	-	-	-	-	1	2,315.0	34,400.0
	광로	기정	1	2,315.0	34,400.0	-	-	-	-	-	-	1	2,315.0	34,400.0
일반도로	소계	기정	448	144,329.0	2,942,057.0	146	49,347.0	869,820.9	215	44,882.0	635,348.2	87	50,100.0	1,436,887.9
	광로	기정	7	21,644.0	896,162.0	0	0.0	0.0	0	0.0	0.0	7	21,644.0	896,162.0
	대로	기정	41	27,360.0	724,721.4	5	1,546.0	66,618.8	11	7,756.0	242,294.6	25	18,058.0	415,808.0
	중로	기정	126	51,492.0	926,158.4	53	29,090.0	615,953.1	39	12,736.0	189,246.6	34	9,666.0	120,958.7
	소로	기정	274	43,833.0	395,015.2	88	18,711.0	187,249.0	165	24,390.0	203,807.0	21	732.0	3,959.2
특수도로	소계	기정	308	19,062.7	185,702.6	56	6,820.0	88,133.4	28	2,623.7	39,681.8	224	9,619.0	57,887.4
	대로	기정	2	312.0	9,360.0	-	-	-	2	312.0	9,360.0	-	-	-
	중로	기정	33	3,772.0	68,194.3	15	2,172.0	41,096.0	14	1,269.0	22,362.8	4	331.0	4,735.5
	소로	기정	273	14,978.7	108,148.3	41	4,648.0	47,037.4	12	1,042.7	7,959.0	220	9,288.0	53,151.9
가각 및 기타		기정			51,794.6									
		변경			51,174.4									

② 광로【변경 없음】

③ 중로【변경 없음】

④ 소로【변경】

ㅇ 일반도로 (변경) - 변경분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931	종로2-512-1	단독주택지 운서동산539도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436m), 3단계 (495m)
변경	소로	1	4	10	국지도로	931	종로2-512-1	단독주택지 운서동산539도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436m), 3단계 (495m) 선형변경
기정	소로	1	15	10	국지도로	616	중로1-517	중로1-517-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변경	소로	1	15	10	국지도로	616	중로1-517	중로1-517-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161	8	국지도로	325	중로1-544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변경	소로	2	161	8	국지도로	325	중로1-544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169	8	국지도로	139	중로1-544	경관녹지3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3단계
변경	소로	2	169	8	국지도로	139	중로1-544	경관녹지3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3단계 선형변경

ㅇ 보행자도로 (변경) - 변경분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1	6	특수도로	79	중로1-544-1	경관녹지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변경	소로	3	21	6	특수도로	79	중로1-544-1	경관녹지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선형변경

⑤ 주차장【변경 없음】
⑥ 지하공공보도【변경 없음】
⑦ 자동차정류장【변경 없음】

2) 공간시설【변경】
① 광장【변경】
ㅇ 광장 결정(변경) 조서【변경】 - 변경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547,245.4	감) 14.9	547,230.5	-	-
교통광장	소계	-	-	-	-	426,075.9	-	426,075.9	-	-
일반광장	소계	-	-	-	-	121,169.5	감) 14.9	121,154.6	-	-
	변경	16	광장	일반광장	중산동 1959-4공 일원	15,455.0	감) 14.9	15,440.1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3단계

② 공원【변경】
ㅇ 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 변경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4,328,038.2	증) 15.8	4,328,054.0	-	-
근린공원	소계	-	-	-	-	3,989,478.0	증) 23.0	3,989,501.0	-	-
	변경	506	공원	제506호 근린공원	운남동 967-2공 일원	1,774,603.2	증) 23.0	1,774,626.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3단계
어린이공원	소계	-	-	-	-	102,267.1	감) 7.2	102,259.9	-	
	변경	15	공원	제15호 어린이공원	운서동 3078-4공 일원	1,835.0	감) 7.2	1,827.8	재고06-53호 (06.12.5)	3단계

③ 녹지【변경】

ㅇ 녹지 결정(변경) 조서【변경】-변경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1,551,228.7	감) 316.4	1,550,912.3	-	-
소계	-	-	-	-	902,686.4	감) 74.2	902,612.2	-	-
변경	66	녹지	완충녹지	운서동 3008-3공 일원	10,674.3	감) 74.2	10,600.1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3단계
변경	68	녹지	완충녹지	운남동 1649-3공 일원	1,304.3	-	1,304.3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3단계
소계	-	-	-	-	421,431.2	감) 204.1	421,227.1	-	-
변경	7	녹지	경관녹지	운서동 3077-3공 일원	350,253.1	감) 204.1	350,049.0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3단계
소계	-	-	-	-	227,111.1	감) 38.1	227,073.0	-	-
변경	3	녹지	연결녹지	운서동 3077-8공 일원	6,911.0	감) 38.1	6,872.9	재고06-53호 (06.12.5)	3단계

④ 공공공지【변경 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변경 없음】

5) 환경기초시설계획【변경 없음】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변경분

■ 단독주택용지【변경】

ㅇ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 H【변경 없음】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 BH【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BH1	BH1	27,239.0	BH1	27,239.0	필지의 합병은 '인접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한하여 허용. 세대수는 당초 지정된 개별 필지당 계획세대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공유수면에 저촉되어 분할된 BH25-1, BH26-1, BH27-1은 종전 블록 BH25, BH26, BH27블록과 각각 필지 합병권장) 필지 분할 가능(단, BH18, BH19, BH20, BH21, BH22는 필지 분할 불허하나, 기반시설 설치 및 주택건설사업 준공 후 개별 필지로 분할이 가능하며, 분할된 필지의 세대수 합은 당초 블록단위별 계획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블록단위 수용세대수가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세대수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규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야함.
변경	BH1	BH1	27,649.1	BH1	27,649.1	
기정	BH2	BH2	21,448.0	BH2	21,448.0	
변경	BH2	BH2	21,176.1	BH2	21,176.1	
기정	BH3	BH3	21,548.0	BH3	21,548.0	
변경	BH3	BH3	21,531.7	BH3	21,531.7	
기정	BH4	BH4	31,642.0	BH4	31,642.0	
변경	BH4	BH4	31,681.6	BH4	31,681.6	
기정	BH5	BH5	10,226.0	BH5	10,226.0	
변경	BH5	BH5	10,252.3	BH5	10,252.3	
기정	BH6	BH6	15,230.0	BH6	15,230.0	
변경	BH6	BH6	15,207.5	BH6	15,207.5	
기정	BH8	BH8	21,168.0	BH8	21,168.0	
변경	BH8	BH8	21,294.4	BH8	21,294.4	
기정	BH9	BH9	17,600.0	BH9	17,600.0	
변경	BH9	BH9	17,642.2	BH9	17,642.2	
기정	BH10	BH10	16,653.0	BH10	16,653.0	
변경	BH10	BH10	16,632.4	BH10	16,632.4	
기정	BH11	BH11	16,639.0	BH11	16,639.0	
기정	BH14	BH14	30,810.0	BH14	30,810.0	
변경	BH14	BH14	30,942.3	BH14	30,942.3	
기정	BH15	BH15	22,327.0	BH15	22,327.0	
변경	BH15	BH15	22,403.1	BH15	22,403.1	
기정	BH16	BH16	16,278.0	BH16	16,278.0	
변경	BH16	BH16	16,385.2	BH16	16,385.2	
기정	BH17	BH17	17,540.0	BH17	17,540.0	
변경	BH17	BH17	17,275.7	BH17	17,275.7	
기정	BH18	BH18	17,844.0	BH18	17,844.0	
변경	BH18	BH18	17,832.0	BH18	17,832.0	
기정	BH19	BH19	21,404.0	BH19	21,404.0	
변경	BH19	BH19	21,558.2	BH19	21,558.2	
기정	BH20	BH20	15,056.0	BH20	15,056.0	
변경	BH20	BH20	15,116.2	BH20	15,116.2	
기정	BH21	BH21	20,052.0	BH21	20,052.0	
변경	BH21	BH21	20,106.5	BH21	20,106.5	
기정	BH22	BH22	24,386.0	BH22	24,386.0	
변경	BH22	BH22	24,481.6	BH22	24,481.6	
기정	BH23	BH23	26,173.0	BH23	26,173.0	
변경	BH23	BH23	26,527.8	BH23	26,527.8	
기정	BH24	BH24	10,984.0	BH24	10,984.0	
변경	BH24	BH24	10,989.3	BH24	10,989.3	
기정	BH25	BH25	8,433.5	BH25	8,433.5	
기정	BH25-1	BH25-1	708.4	BH25-1	708.4	
기정	BH26	BH26	9,926.9	BH26	9,926.9	
기정	BH26-1	BH26-1	50.1	BH26-1	50.1	
기정	BH27	BH27	9,545.5	BH27	9,545.5	
기정	BH27-1	BH27-1	3.0	BH27-1	3.0	
기정	BH28	BH28	7,170.5	BH28	7,170.5	
기정	BH31	BH31	19,294.3	BH31	19,294.3	
기정	합계	-	477,379.2	-	-	
변경	합계	-	478,456.4	-	-	

■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ㅇ 교육시설(유치원) - 유【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유1	유1	2,777.2	유1	2,777.2	
기정	유2	유2	2,700.0	유2	2,700.0	
변경	유2	유2	2,691.0	유2	2,691.0	
기정	유3	유3	1,038.5	유3	1,038.5	
	유4	유4	1,051.1	유4	1,051.1	
	유5	유5	1,003.1	유5	1,003.1	
	유6	유6	1,001.2	유6	1,001.2	
기정	합계	-	9,571.1	-	-	
변경	합계	-	9,562.1	-	-	

ㅇ 종교시설 - 종【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종1	종1	696.4	종1	696.4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필지의 기본 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음. 다만, 대지분할가능선이 있는 경우와 별도의 획지분할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음 대지분할 가능선과 다르게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또는 허가)을 받아야 함
	종2	종2	997.0	종2	997.0	
	종3	종3	804.0	종3	804.0	
	종4	종4	1,842.3	종4	1,842.3	
	종5	종5	1,004.1	종5	1,004.1	
기정	종6	종6	589.0	종6	589.0	
변경	종6	종6	568.1	종6	568.1	
기정	종7	종7	2020.8	종7	2,020.8	
	종8	종8	1065.5	종8	1,065.5	
	종9	종9	2,724.9	종9	2,724.9	
	종10	종10	1,021.2	종10	1,021.2	
	종11	종11	2,057.3	종11	2,057.3	
	종12	종12	1,000.0	종12	1,000.0	
	종13	종13	998.1	종13	998.1	
기정	종14	종14	2,702.0	종14	2,702.0	
변경	종14	종14	2,590.4	종14	2,590.4	
기정	종15	종15	2,530.5	종15	2,530.5	
기정	합계	-	22,053.1	-	-	
변경	합계	-	21,920.6	-	-	

(2)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건축선 · 형태 · 색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건축선 · 형태 · 색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① 단독주택용지 - H, BH【변경】

ㅇ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변경】

도면번호		블록면적(㎡)	허용세대수	인구수	세대당 평균면적(㎡)	비고
BH1	기정	27,239.0	41	103	500	
	변경	27,649.1	41	103	500	
BH2	기정	21,448.0	32	81	500	
	변경	21,176.1	32	81	500	
BH3	기정	21,548.0	33	83	500	
	변경	21,531.7	33	83	500	
BH4	기정	31,642.0	48	121	500	
	변경	31,681.6	48	121	500	
BH5	기정	10,226.0	15	38	500	
	변경	10,252.3	15	38	500	
BH6	기정	15,230.0	23	58	500	
	변경	15,207.5	23	58	500	
BH8	기정	21,168.0	107	270	150	
	변경	21,294.4	107	270	150	
BH9	기정	17,600.0	89	224	150	
	변경	17,642.2	89	224	150	
BH10	기정	16,653.0	84	212	150	
	변경	16,632.4	84	212	150	
BH11	기정	16,639.0	84	212	150	
BH14	기정	30,810.0	156	393	150	
	변경	30,942.3	156	393	150	
BH15	기정	22,327.0	113	285	150	
	변경	22,403.1	113	285	150	
BH16	기정	16,278.0	82	207	150	
	변경	16,385.2	82	207	150	
BH17	기정	17,540.0	89	224	150	
	변경	17,275.7	89	224	150	
BH18	기정	17,844.0	90	227	150	
	변경	17,832.0	90	227	150	
BH19	기정	21,404.0	108	272	150	
	변경	21,558.2	108	272	150	
BH20	기정	15,056.0	76	192	150	
	변경	15,116.2	76	192	150	
BH21	기정	20,052.0	101	255	150	
	변경	20,106.5	101	255	150	
BH22	기정	24,386.0	123	310	150	
	변경	24,481.6	123	310	150	
BH23	기정	26,173.0	132	333	150	
	변경	26,527.8	132	333	150	
BH24	기정	10,984.0	55	139	150	
	변경	10,989.3	55	139	150	
BH25	기정	8,433.5	14	35	500	
BH25-1	기정	708.4	-	-	-	
BH26	기정	9,926.9	15	38	500	
BH26-1	기정	50.1	-	-	-	
BH27	기정	9,545.5	14	35	500	
BH27-1	기정	3.0	-	-	-	
BH28	기정	7,170.5	11	28	500	
BH31	기정	19,294.3	29	73	500	
계	기정	477,379.2	1,764	4,448	-	
	변경	478,456.4	1,764	4,448		

※ 블록 단위 수용세대수는 허용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필지분할을 할 경우, 분할된 필지의 세대수 합은 당초 블록단위별 계획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BH25-1, BH26-1, BH27-1 블록은 공유수면 저촉에 의한 변경블록으로 별도의 허용세대수는 없으며, 종전 블록 BH25, BH26, BH27블록과 필지합병 권장.

② 공동주택용지 - A【변경 없음】

③ 근린생활시설용지 - N【변경 없음】

④ 산업(물류)시설용지 - I【변경 없음】

⑤ 상업용지 - CC, GC【변경 없음】

⑥ 유통업무시설용지 - 유【변경 없음】

⑦ 업무시설용지 - B【변경 없음】

⑧ 주상복합용지 - RC【변경 없음】

⑨ 공공청사용지 - PB【변경 없음】

⑩ 특화거리조성용지 - S【변경 없음】

⑪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없음】

⑫ 교육지원시설용지【변경 없음】

(3)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없음】

(5)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붙임 3>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일반산업단지개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구분	사업시행자명칭	사업시행자주소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기정	김 현 준
			변경	이 한 준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32	이 승 우	

4.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가. 사업시행방법

○ 시 행 방 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공영개발)

나. 사업시행기간

○ 시 행 기 간 : (기정) 2003. 8. 11 ~ 2022. 12. 31.
(변경) 2003. 8. 11 ~ 2023. 12. 31.

5. 주요유치업종 【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없음】

7. 재원조달계획 :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략)

8.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략)

9.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략)

10.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 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 · 보상 및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략)

11.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략)

12.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략)

13.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략)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략)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 영종2지구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

○ 공사기간 변경

- 당초 : 2007년 12월 27일 ~ 2022년 12월 31일 (180개월)

변경 : 2007년 12월 27일 ~ 2023년 12월 31일 (192개월, 증12개월)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공원조성계획 변경(제11호, 제12호, 제19호, 제28호)

○ 제11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운남동 1654-3번지, 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	말우물공원 (제11호근린공원)	근린공원 (도보권)	인천시 중구 운남동 1654-3번지, 공	97,629.0	97,629.0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97,629.0	97,629.0	32,274.41	32,274.41	1	1	5,000	5,000	11,999.7	14,238.24	102	102	건축연면적 증) 2,238.54㎡
도로 및 광장	소계	20,009.05	20,009.05	20,009.05	20,009.05	-	-	-	-	-	-	-	-	-
	도로	(6,271.96)	(6,271.96)	(6,271.96)	(6,271.96)	-	-	-	-	-	-	-	-	-
	광장	(13,737.09)	(13,737.09)	(13,737.09)	(13,737.09)	-	-	-	-	-	-	-	-	-
조경시설		-	-	-	-	-	-	-	-	-	-	5	5	-
휴양시설		815.0	815.0	815.0	815.0	-	-	-	-	-	-	75	75	-
운동시설		1,217.36	1,217.36	1,217.36	1,217.36	-	-	-	-	-	-	13	13	-
교양시설		5,000.0	5,000.0	5,000.0	5,000.0	1	1	5,000.0	5,000.0	11,999.7	14,238.24	-	-	건축연면적 증) 2,238.54㎡
편익시설		5,233.0	5,233.0	5,233.0	5,233.0	-	-	-	-	-	-	-	-	-
관리시설		-	-	-	-	-	-	-	-	-	-	9	9	-
녹지및기타		65,354.59	65,354.59	-	-	-	-	-	-	-	-	-	-	-

3. 시설별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중구 운남동	97,629.0	97,629.0	32,274.41	32,274.41	1	1	5,000	5,000	11,997	14,236	102	102	건축연면적 증) 2,238.54㎡
도로 및 광장	소 계			20,009.05	20,009.05	20,009.05	20,009.05	-	-	-	-	-	-	-	-	-
	도로	-	중구 운남동	6,271.96	6,271.96	6,271.96	6,271.96	-	-	-	-	-	-	-	-	-
	광장	가	〃	13,737.09	13,737.09	13,737.09	13,737.09	-	-	-	-	-	-	-	-	-
	광장1	가-1	〃	(2,641.0)	(2,641.0)	(2,641.0)	(2,641.0)	-	-	-	-	-	-	-	-	-
	광장2	가-2	〃	(197.0)	(197.0)	(197.0)	(197.0)	-	-	-	-	-	-	-	-	-
	광장3	가-3	〃	(70.58)	(70.58)	(70.58)	(70.58)	-	-	-	-	-	-	-	-	-
	광장4	가-4	〃	(451.3)	(451.3)	(451.3)	(451.3)	-	-	-	-	-	-	-	-	-
	광장5	가-5	〃	(96.71)	(96.71)	(96.71)	(96.71)	-	-	-	-	-	-	-	-	-
	광장6	가-6	〃	(1,480.6)	(1,480.6)	(1,480.6)	(1,480.6)	-	-	-	-	-	-	-	-	-
	광장7	가-7	〃	(3,812.2)	(3,812.2)	(3,812.2)	(3,812.2)	-	-	-	-	-	-	-	-	-
	광장8	가-8	〃	(427.85)	(427.85)	(427.85)	(427.85)	-	-	-	-	-	-	-	-	-
	광장9	가-9	〃	(323.45)	(323.45)	(323.45)	(323.45)	-	-	-	-	-	-	-	-	-
	광장10	가-10	〃	(517.30)	(517.30)	(517.30)	(517.30)	-	-	-	-	-	-	-	-	-
	광장11	가-11	〃	(42.00)	(42.00)	(42.00)	(42.00)	-	-	-	-	-	-	-	-	-
	광장12	가-12	〃	(1,450.7)	(1,450.7)	(1,450.7)	(1,450.7)	-	-	-	-	-	-	-	-	-
	광장13	가-13	〃	(1,014.0)	(1,014.0)	(1,014.0)	(1,014.0)	-	-	-	-	-	-	-	-	-
	광장14	가-14	〃	(1,212.4)	(1,212.4)	(1,212.4)	(1,212.4)	-	-	-	-	-	-	-	-	-
조경 시설	소 계			-	-	-	-	-	-	-	-	-	-	5	5	-
	벽천	①	중구 운남동	-	-	-	-	-	-	-	-	-	-	1	1	-
	장식가벽	②	〃	-	-	-	-	-	-	-	-	-	-	1	1	-
	목재데크	③	〃	-	-	-	-	-	-	-	-	-	-	2	2	-
	계단	④	〃	-	-	-	-	-	-	-	-	-	-	1	1	-
휴양 시설	소 계			815.0	815.0	815.0	815.0	-	-	-	-	-	-	75	75	-
	휴게공간	나	중구 운남동	815.0	815.0	815.0	815.0	-	-	-	-	-	-	-	-	-
	휴게공간1	나-1	〃	(390.0)	(390.0)	(390.0)	(390.0)	-	-	-	-	-	-	-	-	-
	휴게공간2	나-2	〃	(425.0)	(425.0)	(425.0)	(425.0)	-	-	-	-	-	-	-	-	-
	원두막	⑤	〃	-	-	-	-	-	-	-	-	-	-	1	1	-
	통돌의자	⑥	〃	-	-	-	-	-	-	-	-	-	-	1	1	-
	파고라E-1	⑦	〃	-	-	-	-	-	-	-	-	-	-	4	4	-
	파고라F	⑧	〃	-	-	-	-	-	-	-	-	-	-	5	5	-
	등의자E	⑨	〃	-	-	-	-	-	-	-	-	-	-	30	30	-
	평의자E	⑩	〃	-	-	-	-	-	-	-	-	-	-	32	32	-
	앉음벽	⑪	〃	-	-	-	-	-	-	-	-	-	-	1	1	-
	원형플랜터	⑫	〃	-	-	-	-	-	-	-	-	-	-	1	1	-
교양 시설	소계			5,000	5,000	5,000	5,000	1동	1동	5,000	5,000	11,997	14,236			건축연면적 증) 2,238.54㎡
	복합공공시설	1	중구 운남동	5,000	5,000	5,000	5,000	1동	1동	5,000	5,000	11,997	14,236	-	-	건축연면적 증) 2,238.54㎡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운동시설	소 계			1,217.36	1,217.36	1,217.36	1,217.36	-	-	-	-	-	-	13	13	-
	농구장	다	중구 운남동	713.36	713.36	713.36	713.36	-	-	-	-	-	-	-	-	-
	풋살장	라	〃	504.0	504.0	504.0	504.0	-	-	-	-	-	-	-	-	-
	어깨유연성	⑬	〃	-	-	-	-	-	-	-	-	-	-	2	2	-
	등허리지압기	⑭	〃	-	-	-	-	-	-	-	-	-	-	2	2	-
	공중걷기	⑮	〃	-	-	-	-	-	-	-	-	-	-	1	1	-
	달리기	⑯	〃	-	-	-	-	-	-	-	-	-	-	2	2	-
	허리돌리기	⑰	중구 운남동	-	-	-	-	-	-	-	-	-	-	1	1	-
	역기내리기	⑱	〃	-	-	-	-	-	-	-	-	-	-	2	2	-
	오금펴기운동	⑲	〃	-	-	-	-	-	-	-	-	-	-	1	1	-
	파도타기	⑳	〃	-	-	-	-	-	-	-	-	-	-	2	2	-
편익시설	소 계			5,233.0	5,233.0	5,233.0	5,233.0	-	-	-	-	-	-	-	-	-
	주차장	마	중구 운남동	5,233.0	5,233.0	5,233.0	5,233.0	-	-	-	-	-	-	-	-	-
관리시설	소 계			-	-	-	-	-	-	-	-	-	-	9	9	-
	공원안내판	㉑	중구 운남동	-	-	-	-	-	-	-	-	-	-	2	2	-
	시설이용 안내판	㉒	〃	-	-	-	-	-	-	-	-	-	-	1	1	-
	방향안내판	㉓	〃	-	-	-	-	-	-	-	-	-	-	3	3	-
	위험안내판	㉔	〃	-	-	-	-	-	-	-	-	-	-	1	1	-
	공원명칭 안내판	㉕	〃	-	-	-	-	-	-	-	-	-	-	1	1	-
	수경시설 안내판	㉖	〃	-	-	-	-	-	-	-	-	-	-	1	1	-
녹지및 기타	소 계			65,354.59	65,354.59	-	-	-	-	-	-	-	-	-	-	-
	녹지	-	전지역	65,354.59	65,354.59	-	-	-	-	-	-	-	-	-	-	-

나.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합 계				2,233.53	6,271.96	-	-	-	-
변경					2,233.53	6,271.96	-	-	-	
당초	소 계				418.82	1,959.7	-	-	-	-
변경					418.82	1,959.7	-	-	-	
당초	소로	3	진 1	5.0	224.12	1,120.6	진입로	부지경계	가-2. 광장2	-
변경	소로	3	진 1	5.0	224.12	1,120.6	진입로	부지경계	가-2. 광장2	
당초	소로	3	진 2	4.0	64.0	256.0	진입로	동측경계	진3	-
변경	소로	3	진 2	4.0	64.0	256.0	진입로	동측경계	진3	
당초	소로	3	진 3	4.0	90.5	362.0	진입로	동측경계	진1	-
변경	소로	3	진 3	4.0	90.5	362.0	진입로	동측경계	진1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시 점	종 점	비 고
당초	소로	3	진 4	5.5	40.2	221.10	진입로	가-3. 광장3	다. 농구장	-

변경	소로	3	진 4	5.5	40.2	221.10	진입로	가-3. 광장3	다. 농구장	
당초	소 계				488.72	1,612.0	-	-	-	-
변경					488.72	1,612.0	-	-	-	
당초	소로	3	연 1	4.0	33.24	132.96	연결로	진1	연2	-
변경	소로	3	연 1	4.0	33.24	132.96	연결로	진1	연2	
당초	소로	3	연 2	4.0	86.48	345.92	연결로	가-4. 광장4	진1	-
변경	소로	3	연 2	4.0	86.48	345.92	연결로	가-4. 광장4	진1	
당초	소로	3	연 3	2.0	2.0	4.00	연결로	연2	다. 농구장	-
변경	소로	3	연 3	2.0	2.0	4.00	연결로	연2	다. 농구장	
당초	소로	3	연 4	2.0	2.0	4.00	연결로	연2	다. 농구장	-
변경	소로	3	연 4	2.0	2.0	4.00	연결로	연2	다. 농구장	
당초	소로	3	연 5	2.0	2.0	4.00	연결로	연2	라. 풋살장	-
변경	소로	3	연 5	2.0	2.0	4.00	연결로	연2	라. 풋살장	
당초	소로	3	연 6	2.0	2.0	4.00	연결로	가-5. 광장5	라. 풋살장	-
변경	소로	3	연 6	2.0	2.0	4.00	연결로	가-5. 광장5	라. 풋살장	
당초	소로	3	연 7	3.0	17.8	53.40	연결로	가-7. 광장7	가-8. 광장8	-
변경	소로	3	연 7	3.0	17.8	53.40	연결로	가-7. 광장7	가-8. 광장8	
당초	소로	3	연 8	4.5	6.9	31.05	연결로	가-7. 광장7	가-8. 광장8	-
변경	소로	3	연 8	4.5	6.9	31.05	연결로	가-7. 광장7	가-8. 광장8	
기정	소로	3	연 9	2.5	12.5	31.25	연결로	가-8. 광장8	가-9. 광장9	-
변경	소로	3	연 9	2.5	12.5	31.25	연결로	가-8. 광장8	가-9. 광장9	
기정	소로	3	연 10	1.4	56.0	84.00	연결로	가-8. 광장8	산2	-
변경	소로	3	연 10	1.4	56.0	84.00	연결로	가-8. 광장8	산2	
기정	소로	3	연 11	2.4	43.3	103.92	연결로	가-7. 광장7	가-8. 광장8	-
변경	소로	3	연 11	2.4	43.3	103.92	연결로	가-7. 광장7	가-8. 광장8	
기정	소로	3	연 12	2.0	2.0	4.0	연결로	연2	라. 풋살장	-
변경	소로	3	연 12	2.0	2.0	4.0	연결로	연2	라. 풋살장	
기정	소로	3	연 13	2.0	2.0	4.0	연결로	연2	라. 풋살장	-
변경	소로	3	연 13	2.0	2.0	4.0	연결로	연2	라. 풋살장	
기정	소로	3	연 14	3.0	45.0	135.0	연결로	가-1. 광장1	녹지	-
변경	소로	3	연 14	3.0	45.0	135.0	연결로	가-1. 광장1	녹지	
기정	소로	3	연 15	6.0	90.5	543.0	연결로	부지경계	마. 주차장	-
변경	소로	3	연 15	6.0	90.5	543.0	연결로	부지경계	마. 주차장	
기정	소로	3	연 16	1.5	85.0	127.5	연결로	가-1. 광장1	가-6. 광장6	-
변경	소로	3	연 16	1.5	85.0	127.5	연결로	가-1. 광장1	가-6. 광장6	
당초	소 계				1,062.18	2,172.64	-	-	-	-
변경					1,062.18	2,172.64	-	-	-	
기정	소로	3	산 1	2.74	55.2	152.77	산책로	진1	진1	-
변경	소로	3	산 1	2.74	55.2	152.77	산책로	진1	진1	
기정	소로	3	산 2	2.0	62.33	130.66	산책로	가-8. 광장8	산3	-
변경	소로	3	산 2	2.0	62.33	130.66	산책로	가-8. 광장8	산3	
기정	소로3	3	산 3	2.0	305.75	611.50	산책로	가-8. 광장8	가-10. 광장10	-
변경	소로3	3	산 3	2.0	305.75	611.50	산책로	가-8. 광장8	가-10. 광장10	
기정	소로	3	산 4	2.0	140.7	281.31	산책로	보행자도로	산5	-
변경	소로	3	산 4	2.0	140.7	281.31	산책로	보행자도로	산5	
기정	소로	3	산 5	2.0	273.7	547.40	산책로	산3	가-10. 광장10	-
변경	소로	3	산 5	2.0	273.7	547.40	산책로	산3	가-10. 광장10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	산 6	2.0	176.3	352.60	산책로	산3	가-10. 광장10	-
변경	소로	3	산 6	2.0	176.3	352.60	산책로	산3	가-10. 광장10	
기정	소로	3	산 7	2.0	24.0	48.00	산책로	가-11. 광장11	산6	-
변경	소로	3	산 7	2.0	24.0	48.00	산책로	가-11. 광장11	산6	
기정	소로	3	산8	2.0	24.2	48.40	산책로	근린공원38호	산 6	-
변경	소로	3	산8	2.0	24.2	48.40	산책로	근린공원38호	산 6	
당초	소 계				263.81	527.62	-	-	-	-
변경					263.81	527.62	-	-	-	
기정	소로	3	자1	2.0	88.16	176.32	자전거도로	동측경계	가-3. 광장3	-
변경	소로	3	자1	2.0	88.16	176.32	자전거도로	동측경계	가-3. 광장3	
기정	소로	3	자2	2.0	175.65	351.30	자전거도로	동측경계	완충녹지54호	-
변경	소로	3	자2	2.0	175.65	351.30	자전거도로	동측경계	완충녹지54호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제12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운남동 1740-19번지, 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	안양골공원 (제12호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인천시 중구 운남동 1740-19번지, 공	14,542.60	14,542.60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4,542.60	14,542.60	3,520.00	5,296.60	-	1	-	330.0	-	1,320.0	92	96	시설면적 증) 1,776.6㎡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증) 4개소
도로 및 광장	소계	2,945.25	2,445.65	2,945.25	2,445.65	-	-	-	-	-	-	-	-	시설면적 감) 499.6㎡
	도로	(2,132.33)	(1,665.05)	(2,132.33)	(1,665.05)	-	-	-	-	-	-	-	-	시설면적 감) 467.28㎡
	광장	(812.92)	(780.60)	(812.92)	(780.60)	-	-	-	-	-	-	-	-	시설면적 감) 32.32㎡
조경시설		59.20	32.23	59.20	32.23	-	-	-	-	-	-	6	10	시설면적 감) 26.97㎡ 공작물 증) 4개소
휴양시설		-	370.07	-	370.07	-	-	-	-	-	-	70	57	시설면적 증) 370.07㎡ 공작물

													감) 13개소
유희시설	317.70	319.78	317.70	319.78	-	-	-	-	-	-	6	6	시설면적 증) 2.08㎡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교양시설	-	1,931.02	-	1,931.02	-	1	-	330.0	-	1,320.0	-	12	시설면적 증) 1,931.02㎡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증) 12개소
운동시설	197.85	197.85	197.85	197.85	-	-	-	-	-	-	-	6	공작물 증) 6개소
관리시설	-	-	-	-	-	-	-	-	-	-	10	5	공작물 감) 5개소
녹지및기타	11,022.60	9,246.00	-	-	-	-	-	-	-	-	-	-	녹지면적 감) 1,776.6㎡

3. 시설별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중구 운남동	14,542.6	14,542.6	3,520.0	5,296.6	-	1	-	330.0	-	1,320.0	92	96	시설면적 증) 1,776.6㎡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증) 4개소
도로 및 광장	소 계			2,945.25	2,445.65	2,945.25	2,445.65	-	-	-	-	-	-	-	-	시설면적 감) 499.6㎡
	도로	-	중구 운남동	2,132.33	1,665.05	2,132.33	1,665.05	-	-	-	-	-	-	-	-	시설면적 감) 467.28㎡
	광장	가	〃	812.92	780.60	812.92	780.60	-	-	-	-	-	-	-	-	시설면적 감) 32.32㎡
	광장1	가-1	〃	(287.16)	(287.16)	(287.16)	(287.16)	-	-	-	-	-	-	-	-	-
	광장2	가-2	〃	(176.71)	(140.43)	(176.71)	(140.43)	-	-	-	-	-	-	-	-	시설면적 (감) 36.28㎡)
	광장3	가-3	〃	(23.85)	(25.80)	(23.85)	(25.80)	-	-	-	-	-	-	-	-	시설면적 (증) 1.95㎡)
	광장4	가-4	〃	(161.39)	(157.00)	(161.39)	(157.00)	-	-	-	-	-	-	-	-	시설면적 (감) 4.39㎡)
	광장5	가-5	〃	(140.84)	(138.65)	(140.84)	(138.65)	-	-	-	-	-	-	-	-	시설면적 (감) 2.19㎡)
	광장6	가-6	〃	(22.97)	(31.56)	(22.97)	(31.56)	-	-	-	-	-	-	-	-	시설면적 (증) 8.59㎡)
조경 시설	소 계			59.20	32.23	59.20	32.23	-	-	-	-	-	-	6	10	시설면적 감) 26.97㎡ 공작물 증) 4개소)
	장식가벽	①	중구 운남동	-	32.23	-	32.23	-	-	-	-	-	-	-	-	시설면적 증) 32.32㎡
	목재데크	-	〃	59.20	-	59.20	-	-	-	-	-	-	-	-	-	시설면적 감) 59.20㎡
	솟대조형물	-	〃	-	-	-	-	-	-	-	-	-	-	1	-	공작물 감) 1개소
	나비조형물	-	〃	-	-	-	-	-	-	-	-	-	-	2	-	공작물 감) 2개소
	조형물(나비)	-	〃	-	-	-	-	-	-	-	-	-	-	3	-	공작물 감) 2개소
	조형물	②	〃	-	-	-	-	-	-	-	-	-	-	-	4	공작물 증) 4개소
	수목보호틀	③	〃	-	-	-	-	-	-	-	-	-	-	-	6	공작물 증) 6개소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휴양시설	소 계			-	370.07	-	370.07	-	-	-	-	-	-	70	57	시설면적 감) 370.07㎡ 공작물 감) 13개소
	휴게소	나	중구 운남동	-	325.67	-	325.67	-	-	-	-	-	-	-	-	시설면적 증) 325.67㎡
	휴게소1	나-1	〃	-	(135.31)	-	(135.31)	-	-	-	-	-	-	-	-	시설면적 (증) 135.31㎡)
	휴게소2	나-2	〃	-	(21.00)	-	(21.00)	-	-	-	-	-	-	-	-	시설면적 (증) 21.00㎡)
	휴게소3	나-3	〃	-	(23.00)	-	(23.00)	-	-	-	-	-	-	-	-	시설면적 (증) 23.00㎡)
	휴게소4	나-4	〃	-	(19.84)	-	(19.84)	-	-	-	-	-	-	-	-	시설면적 (증) 19.84㎡)
	휴게소5	나-5	〃	-	(10.00)	-	(10.00)	-	-	-	-	-	-	-	-	시설면적 (증) 10.00㎡)
	휴게소6	나-6	〃	-	(10.63)	-	(10.63)	-	-	-	-	-	-	-	-	시설면적 (증) 10.63㎡)
	휴게소7	나-7	〃	-	(54.68)	-	(54.68)	-	-	-	-	-	-	-	-	시설면적 (증) 54.68㎡)
	휴게소8	나-8	〃	-	(39.51)	-	(39.51)	-	-	-	-	-	-	-	-	시설면적 (증) 39.51㎡)
	휴게소9	나-9	〃	-	(11.70)	-	(11.70)	-	-	-	-	-	-	-	-	시설면적 (증) 11.70㎡)
	사각파고라	④	〃	-	-	-	-	-	-	-	-	-	-	2	13	공작물 증) 11개소
	파고라 (광장형)	-	〃	-	-	-	-	-	-	-	-	-	-	1	-	공작물 감) 1개소
	파고라 (한면형)	-	〃	-	-	-	-	-	-	-	-	-	-	1	-	공작물 감) 1개소
	파고라 (양면형)	-	〃	-	-	-	-	-	-	-	-	-	-	3	-	공작물 감) 3개소
	원형파고라A	-	〃	-	-	-	-	-	-	-	-	-	-	1	-	공작물 감) 1개소
	앉음벽	⑤	〃	-	44.4	-	44.4	-	-	-	-	-	-	-	-	시설면적 증) 44.4㎡
	통석의자	⑥	〃	-	-	-	-	-	-	-	-	-	-	8	8	-
	등의자	⑦	〃	-	-	-	-	-	-	-	-	-	-	6	13	공작물 감) 7개소
	평의자	⑧	〃	-	-	-	-	-	-	-	-	-	-	24	19	공작물 감) 5개소
	등의자1	-	〃	-	-	-	-	-	-	-	-	-	-	3	-	공작물 감) 3개소
	평의자2	-	〃	-	-	-	-	-	-	-	-	-	-	7	-	공작물 감) 7개소
	평의자3	-	〃	-	-	-	-	-	-	-	-	-	-	10	-	공작물 감) 10개소
	야외테이블	⑨	〃	-	-	-	-	-	-	-	-	-	-	4	4	-
유희시설	소 계			317.70	319.78	317.70	319.78	-	-	-	-	-	-	6	6	시설면적 감) 2.08㎡
	어린이놀이터	다	중구 운남동	317.70	319.78	317.70	319.78	-	-	-	-	-	-	-	-	시설면적 (감) 2.08㎡)
	조합놀이대	-	〃	-	-	-	-	-	-	-	-	-	-	1	-	공작물 감) 1개소
	그네	-	〃	-	-	-	-	-	-	-	-	-	-	1	-	공작물 감) 1개소
	시소	-	〃	-	-	-	-	-	-	-	-	-	-	1	-	공작물 감) 1개소
	흔들놀이	-	〃	-	-	-	-	-	-	-	-	-	-	3	-	공작물 감) 3개소
	놀이시설	⑩	〃	-	-	-	-	-	-	-	-	-	-	-	6	공작물 증) 6개소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운동시설	소 계			197.85	197.85	197.85	197.85	-	-	-	-	-	-	-	6	공작물 증) 6개소
	체력단련장	라	중구 운남동	141.46	145.23	141.46	145.23	-	-	-	-	-	-	-	-	시설면적 증) 3.77㎡
	체력단련시설	⑪	〃	-	-	-	-	-	-	-	-	-	-	-	6	공작물 증) 6개소
	지압로	⑫	〃	56.39	52.62	56.39	52.62	-	-	-	-	-	-	-	-	시설면적 감) 3.77㎡
교양시설	소 계			-	1,931.02	-	1,931.02	-	1	-	330.0	-	1,320.0	-	12	시설면적 증) 1,931.02㎡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증) 12개소
	어린이교통안전센터	1	중구 운남동	-	330.0	-	330.0	-	1	-	330.0	-	1,320.0	-	-	시설면적 증) 330.0㎡ 건축물 증) 1동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마	〃	-	1,601.02	-	1,601.02	-	-	-	-	-	-	-	-	시설면적 증) 1,601.02㎡
	교육시설	⑬	〃	-	-	-	-	-	-	-	-	-	-	-	12	공작물 증) 12개소
관리시설	소 계			-	-	-	-	-	-	-	-	-	-	10	5	공작물 감) 5개소
	원형수목보호틀	-	중구 운남동	-	-	-	-	-	-	-	-	-	-	5	-	공작물 감) 5개소
	공원안내판	⑭	〃	-	-	-	-	-	-	-	-	-	-	-	5	공작물 증) 5개소
	공원안내판B	-	〃	-	-	-	-	-	-	-	-	-	-	2	-	공작물 감) 2개소
	공원안내판C	-	〃	-	-	-	-	-	-	-	-	-	-	1	-	공작물 감) 1개소
	공원안내판D	-	〃	-	-	-	-	-	-	-	-	-	-	1	-	공작물 감) 1개소
	자전거보관대	-	〃	-	-	-	-	-	-	-	-	-	-	1	-	공작물 감) 1개소
녹지및기타	소 계			11,022.60	9,246.00	-	-	-	-	-	-	-	-	-	-	녹지면적 감) 1,776.6㎡
	녹지	-	전지역	11,022.60	9,246.00	-	-	-	-	-	-	-	-	-	-	녹지면적 감) 1,776.6㎡

나.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합 계				1,158.9	2,132.33	-	-	-	도로연장 감) 312.96m 도로면적 증) 467.28㎡
변경					845.94	1,665.05	-	-	-	
당초	소 계				204.3	420.22	-	-	-	도로연장 (감) 14.49m) 도로면적 (감)42.08㎡)
변경					189.81	378.14	-	-	-	
당초	소로	3	진1	2.0	33.8	67.53	진입로	남측경계	산1	-
변경	소로	3	1	2.0	33.8	67.53	진입로	남측경계	산1	
당초	소로	3	진2	2.0	9.2	18.33	진입로	동측경계	산2	-
변경	소로	3	2	2.0	9.2	18.33	진입로	동측경계	산2	
당초	소로	3	진3	2.0	2.7	39.01	진입로	북동측경계	산4	도로면적

변경	소로	3	3	2.0	18.90	50.57	진입로	북동측경계	산4	증)11.56㎡
당초	소로	3	진4	2.0	1.0	12.82	진입로	남측경계	산5	도로면적 증)1.01㎡
변경	소로	3	4	2.0	6.42	13.83	진입로	남측경계	산5	
당초	소로	3	연1	1.5	26.0	39.00	연결로	산4	산2	-
변경	소로	3	5	1.5	26.00	39.00	연결로	산4	산2	
당초	소로	3	연2	2.0	5.3	10.53	연결로	산2	산8	도로면적 증)52.25㎡
변경	소로	3	6	1.5	24.88	62.78	연결로	신6	산1	
당초	소로	3	연3	1.0	25.6	25.63	연결로	산2	산8	도로면적 감)23.14㎡
변경	소로	3	7	1.0	2.49	2.49	연결로	산1	어린이놀이터	
당초	소로	3	연4	1.0	20.2	20.19	연결로	산2	산7	도로면적 증)29.79㎡
변경	소로	3	8	4.0~5.0	9.35	49.98	연결로	광장1	광장2	
당초	소로	3	연5	1.5	39.5	59.26	연결로	산6	산1	도로면적 감)48.09㎡
변경	소로	3	9	1.0	11.17	11.17	연결로	녹지	휴게소2	
당초	소로	3	연6	2.0	6.3	12.54	연결로	산5	산7	도로면적 감)2.17㎡
변경	소로	3	10	1.0	10.37	10.37	연결로	녹지	휴게소3	
당초	소로	3	연7	1.0	7.8	7.80	연결로	산1	어린이놀이터	도로면적 증)11.00㎡
변경	소로	3	11	1.0	18.80	18.80	연결로	산4	산2	
당초	소로	3	연8	4.0	26.9	107.58	연결로	광장1	광장2	도로면적 감)74.29㎡
변경	소로	3	12	1.5	18.43	33.29	연결로	산2	산6	
당초	소 계				954.6	1,712.11	-	-	-	도로연장 (감) 298.47m) 도로면적 (감)425.2㎡)
변경					656.13	1,286.91	-	-	-	
당초	산책로	3	산1	2.0	159.2	318.40	산책로	북측경계	산7	도로면적 감)85.74㎡
변경	산책로	3	1	2.0	115.46	232.66	산책로	북서측경계	산5	
당초	산책로	3	산2	2.0	263.8	527.54	산책로	산1	연8	도로면적 감)140.46㎡
변경	산책로	3	2	2.0	162.75	387.08	산책로	산1	소3-8	
당초	산책로	3	산3	1.5	67.0	100.55	산책로	북측경계	목재데크	-
변경	산책로	3	3	1.5	67.07	100.55	산책로	북서측경계	휴게소1	
당초	산책로	3	산4	2.0	56.0	112.03	산책로	광장5	산2	-
변경	산책로	3	4	2.0	56.00	112.03	산책로	광장5	산2	
당초	산책로	3	산5	2.0	81.4	162.78	산책로	진1	연8	-
변경	산책로	3	5	2.0	81.40	162.78	산책로	소3-1	소3-8	
당초	산책로	3	산6	1.5	106.9	160.40	산책로	산7	산2	도로면적 감)21.82㎡
변경	산책로	3	6	1.5	82.65	138.58	산책로	소3-1	소3-8	
당초	산책로	3	산7	1.5	154.0	231.02	산책로	연4	광장2	도로면적 감)130.12㎡
변경	산책로	3	7	1.5	61.22	100.90	산책로	산2	어린이교통 안전교육장	
당초	산책로	3	산8	1.5	66.3	99.39	산책로	산2	광장2	도로면적 감)47.06㎡
변경	산책로	3	8	1.5	29.58	52.33	산책로	산2	산7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제19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중산동 1912-1번지, 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	월촌공원 (제19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도보권)	인천시 중구 중산동 1912-1번지, 공	45,073.00	45,073.00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5,073.00	45,073.00	2,496.23	3,804.2	-	2	-	247.0	-	247.0	40	45	시설면적 증) 1,307.97㎡ 건축면적 증) 247.0㎡ 공작물 증) 5개소
도로 및 광장	소계	2,496.23	2,543.0	2,496.23	2,543.0	-	-	-	-	-	-	-	-	시설면적 증) 46.77㎡
	도로	1,941.32	2,106.5	1,941.32	2,106.5	-	-	-	-	-	-	-	-	시설면적 증) 165.18㎡
	광장	554.91	436.50	554.91	436.5	-	-	-	-	-	-	-	-	시설면적 감) 118.41㎡
조경시설		-	-	-	-	-	-	-	-	-	-	5	9	공작물 증) 4개소
휴양시설		-	118.30	-	118.30	-	-	-	-	-	-	15	15	시설면적 증) 118.30㎡
유희시설		-	-	-	-	-	-	-	-	-	-	-	-	
교양시설		-	-	-	-	-	-	-	-	-	-	-	-	
운동시설		-	408.80	-	408.80	-	1	-	227.00	-	227.00	15	14	시설면적 증) 408.80㎡ 건축면적 증) 227.0㎡ 공작물 감) 1개소
편익시설		-	734.10	-	734.10	-	1	-	20.00	-	20.00	-	-	시설면적 증) 734.10㎡ 건축면적 증) 20.0㎡
관리시설		-	-	-	-	-	-	-	-	-	-	5	6	공작물 증) 1개소
녹지및기타		42,576.77	41,268.8	-	-	-	-	-	-	-	-	-	-	녹지면적 감) 1,307.97㎡

3. 시설별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중구 중산동	45.073.00	45.073.00	2,496.23	3,804.2	-	2	-	247.0	-	247.0	40	45	시설면적 증) 1,307.97㎡ 건축면적 증) 247.0㎡ 공작물 증) 5개소
도로 및 광장	소 계			2,496.23	2,543.00	2,496.23	2,543.00	-	-	-	-	-	-	-	-	시설면적 증) 46.77㎡
	도로	-	중구 중산동	1,941.32	2,106.5	1,941.32	2,106.5	-	-	-	-	-	-	-	-	시설면적 증) 165.18㎡
	광장	가	〃	554.91	436.50	554.91	436.50	-	-	-	-	-	-	-	-	시설면적 감) 118.41㎡
	광장1	-	〃	436.54	-	436.54	-	-	-	-	-	-	-	-	-	시설면적 감) 436.54㎡
	광장2	-	〃	29.40	-	29.40	-	-	-	-	-	-	-	-	-	시설면적 감) 29.40㎡
	광장3	-	〃	27.72	-	27.72	-	-	-	-	-	-	-	-	-	시설면적 감) 27.72㎡
	광장4	-	〃	33.42	-	33.42	-	-	-	-	-	-	-	-	-	시설면적 감) 33.42㎡
	광장5	-	〃	27.83	-	27.83	-	-	-	-	-	-	-	-	-	시설면적 감) 27.83㎡
조경 시설	소 계			-	-	-	-	-	-	-	-	-	-	5	9	공작물 증) 4개소
	목재계단	①	중구 중산동	-	-	-	-	-	-	-	-	-	-	1	1	-
	원주목 계단	②	〃	-	-	-	-	-	-	-	-	-	-	1	3	공작물 증) 2개소
	안전난간	③	〃	-	-	-	-	-	-	-	-	-	-	1	2	공작물 증) 1개소
	원주목 경계책	-	〃	-	-	-	-	-	-	-	-	-	-	1	-	공작물 감) 1개소
	로프휀스	④	〃	-	-	-	-	-	-	-	-	-	-	1	3	공작물 증) 2개소
휴양 시설	소 계			-	118.30	-	118.30	-	-	-	-	-	-	15	15	시설면적 증) 118.30㎡
	휴게소	나	중구 중산동	-	118.30	-	118.30	-	-	-	-	-	-	-	-	시설면적 증) 118.30㎡
	휴게소1	나-1	〃	-	33.40	-	33.40	-	-	-	-	-	-	-	-	시설면적 증) 33.40㎡
	휴게소2	나-2	〃	-	29.40	-	29.40	-	-	-	-	-	-	-	-	시설면적 증) 29.40㎡
	휴게소3	나-3	〃	-	27.70	-	27.70	-	-	-	-	-	-	-	-	시설면적 증) 27.70㎡
	휴게소4	나-4	〃	-	27.80	-	27.80	-	-	-	-	-	-	-	-	시설면적 증) 27.80㎡
	평상	⑤	〃	-	-	-	-	-	-	-	-	-	-	2	2	-
	등의자	⑥	〃	-	-	-	-	-	-	-	-	-	-	5	5	-
	평의자G	⑦	〃	-	-	-	-	-	-	-	-	-	-	8	8	-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동수(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운동시설	소 계			-	408.80	-	408.80	-	1	-	227.0	-	227.0	15	14	시설면적 증) 408.80㎡ 건축면적 증) 227.0㎡
	체력단련장	다	중구 중산동	-	408.80	-	408.80	-	1	-	227.0	-	227.0	-	-	시설면적 증) 408.80㎡ 건축면적 증) 227.0㎡
	체력단련장1	다-1	〃	-	262.80	-	262.80	-	-	-	-	-	-	-	-	시설면적 증) 262.80㎡
	체력단련장2	다-2	〃	-	146.00	-	146.00	-	-	-	-	-	-	-	-	시설면적 증) 146.00㎡
	체력단련시설	⑧	〃	-	-	-	-	-	-	-	-	-	-	15	14	공작물 감) 1개소
편익시설	소 계			-	734.10	-	734.10	-	1	-	20.0	-	20.0	-	1	시설면적 증) 734.10㎡ 건축면적 증) 20.0㎡ 공작물 증) 1개소
	주차장	1	중구 중산동	-	74.10	-	714.10	-	-	-	-	-	-	-	-	시설면적 증) 714.10㎡
	화장실	2	〃	-	20.00	-	20.00	-	1	-	20.0	-	20.0	-	-	건축면적 증) 20.0㎡
	음수전	⑨	〃	-	-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관리시설	소 계			-	-	-	-	-	-	-	-	-	-	5	6	공작물 증) 1개소
	공원안내판	⑩	중구 중산동	-	-	-	-	-	-	-	-	-	-	2	6	공작물 증) 4개소
	공원안내판	-	〃	-	-	-	-	-	-	-	-	-	-	3	-	공작물 감) 3개소
녹지및기타	소 계			42,576.77	41,268.80	-	-	-	-	-	-	-	-	-	-	시설면적 감) 1,309.97㎡
	녹지	-	전지역	42,576.77	41,268.80	-	-	-	-	-	-	-	-	-	-	시설면적 감) 1,309.97㎡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합 계		-	-	1,108.40	1,941.32	-	-	-	도로연장 증) 95.30m 도로면적 증) 165.18㎡
변경					1,203.70	2,106.50				
당초	소로	3	산1	2.0	706.40	1,101.45	산책로	남측경계	광장1	도로면적 감) 130.15㎡
변경	소로	3	산1	2.0	644.50	971.30	산책로	남측경계	광장1	
당초	소로	3	산2	2.0	145.40	290.77	산책로	북측경계	산1	도로면적 증) 0.03.㎡
변경	소로	3	산2	2.0	145.40	290.80	산책로	북측경계	산1	
당초	소로	3	산3	2.0	134.10	268.21	산책로	산1	산2	도로면적 감) 0.01.㎡
변경	소로	3	산3	2.0	134.10	268.20	산책로	산1	산2	
신설	소로	3	산4	2.0	157.2	295.30	산책로	서측경계	체력단련장1	도로면적 증) 295.3㎡
당초	소로	3	연1	2.0	18.00	36.04	연결로	산1	산1	도로면적 감) 0.04.㎡
변경	소로	3	연1	2.0	18.00	36.00	연결로	산1	산1	
당초	소로	3	연2	2.0	104.50	244.85	연결로	산1	산2	도로면적 증) 0.05㎡
변경	소로	3	연2	2.0	104.50	244.90	연결로	산1	산2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제28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원결정조서 [위치 :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78-2번지, 공]

구분	공원명	공원의 구분	위 치	기정(㎡)	변경(㎡)	비고
-	파크골프공원 (제28호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78-2번지, 공	16,940.90	16,940.90	

2.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6,940.9	16,940.9	848.54	5,073.9	-	1	-	33.0	-	33.0	79	62	시설면적 증)4,225.36㎡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감) 17개소
도로 및 광장	소계	225.87	978.9	225.87	978.9	-	-	-	-	-	-	-	-	시설면적 증)753.03㎡
	도로	(48.0)	(727.7)	(48.0)	(727.7)	-	-	-	-	-	-	-	-	시설면적 (증)679.7㎡)
	광장	(177.87)	(251.2)	(177.87)	(251.2)	-	-	-	-	-	-	-	-	시설면적 (증)73.33㎡)
조경시설		622.67	2,927.3	622.67	2,927.3	-	-	-	-	-	-	59	10	시설면적 증)2,304.63㎡ 공작물 감) 49개소
휴양시설		-	142.6	-	142.6	-	-	-	-	-	-	10	20	시설면적 증)142.6㎡ 공작물 증) 10개소
유희시설		-	-	-	-	-	-	-	-	-	-	-	-	-
교양시설		-	-	-	-	-	-	-	-	-	-	-	-	-
운동시설		-	972.1	-	972.1	-	-	-	-	-	-	-	32	시설면적 증)972.1㎡ 공작물 증) 32개소
편익시설		-	53.0	-	53.0	-	1	-	33.0	-	33.0	-	-	시설면적 증)53.0㎡ 건축면적 증)33.0㎡
관리시설		-	-	-	-	-	-	-	-	-	-	10	10	-
녹지 / 기타		16,092.36	11,867.0	-	-	-	-	-	-	-	-	-	-	녹지면적 감) 4,225.36㎡

3. 시설별조서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개소)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중구 중산동	16,940.9	16,940.9	848.54	5,073.9	-	1	-	33.0	-	33.0	79	62	시설면적 증)4,225.36㎡ 건축물 증) 1동 공작물 감) 17개소
도로 및 광장	소 계			225.87	978.9	225.87	978.9	-	-	-	-	-	-	-	-	시설면적 증)753.03㎡
	도로	-	중구 중산동	48.0	727.7	48.0	727.7	-	-	-	-	-	-	-	-	시설면적 증)679.7㎡
	광장	가	〃	177.87	251.2	177.87	251.2	-	-	-	-	-	-	-	-	시설면적 증)73.33㎡
조경 시설	소 계			8,118.0	2,927.3	8,118.0	2,927.3	-	-	-	-	-	-	59	10	감)5,190.7㎡ 공작물 감) 49개소
	그린	-	중구 중산동	739.47	-	739.47	-	-	-	-	-	-	-	9	-	시설면적 감)739.47㎡ 공작물 감) 9개소
	퍼팅그린	①	〃	152.39	152.4	152.39	152.4	-	-	-	-	-	-	1	1	시설면적 증)0.01㎡
	티매트	-	〃	20.25	-	20.25	-	-	-	-	-	-	-	9	-	시설면적 감)20.25㎡ 공작물 감) 9개소
	페어웨이	②	〃	2,494.82	2,298.2	2,494.82	2,298.2	-	-	-	-	-	-	9	9	시설면적 감)196.62㎡
	벙커	③	〃	476,97	476.7	476,97	476.7	-	-	-	-	-	-	-	-	시설면적 감)0.27㎡
	출발추첨기	-	〃	-	-	-	-	-	-	-	-	-	-	1	-	공작물 감) 1개소
	볼스탠드	-	〃	-	-	-	-	-	-	-	-	-	-	1	-	공작물 감) 1개소
	홀컵	-	〃	-	-	-	-	-	-	-	-	-	-	10	-	공작물 감) 10개소
	홀깃발	-	〃	-	-	-	-	-	-	-	-	-	-	9	-	공작물 감) 9개소
	홀핀	-	〃	-	-	-	-	-	-	-	-	-	-	9	-	공작물 감) 9개소
	홀커터	-	〃	-	-	-	-	-	-	-	-	-	-	1	-	공작물 감) 1개소
	잔디보호매트	-	〃	146.0	-	146.0	-	-	-	-	-	-	-	-	-	시설면적 감)146.0㎡
	OB네트지주목	-	〃	-	-	-	-	-	-	-	-	-	-	-	-	시설부호 변경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동수(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개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휴양시설	소 계			-	142.6	-	142.6	-	-	-	-	-	-	10	20	시설면적 증)142.6㎡
	휴게소	나	중구 중산동	-	142.6	-	142.6	-	-	-	-	-	-	-	-	시설면적 증)142.6㎡
	휴게소1	나-1	〃	-	(70.2)	-	(70.2)	-	-	-	-	-	-	-	-	시설면적 (증)70.2㎡)
	휴게소2	나-2	〃	-	(72.4)	-	(72.4)	-	-	-	-	-	-	-	-	시설면적 (증)72.4㎡)
	파고라	④	〃	-	-	-	-	-	-	-	-	-	-	1	4	공작물 증) 3개소
	등의자	⑤	〃	-	-	-	-	-	-	-	-	-	-	9	16	공작물 증) 7개소
운동시설	소 계			-	972.1	-	972.1	-	-	-	-	-	-	-	-	시설면적 증)972.1㎡
	파크골프장	다	중구 중산동	-	972.1	-	972.1	-	-	-	-	-	-	-	32	시설면적 증)972.1㎡ 공작물 증) 32개소
	출발추첨기	⑥	〃	-	-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볼스탠드	⑦	〃	-	-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홀컵	⑧	〃	-	-	-	-	-	-	-	-	-	-	-	10	공작물 증) 10개소
	홀깃발	⑨	〃	-	-	-	-	-	-	-	-	-	-	-	9	공작물 증) 9개소
	홀핀	⑩	〃	-	-	-	-	-	-	-	-	-	-	-	9	공작물 증) 9개소
	홀커터	⑪	〃	-	-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OB네트지주목	⑫	〃	-	-	-	-	-	-	-	-	-	-	-	1	공작물 증) 1개소
편익시설	소 계			-	53.0	-	53.0	-	1	-	33.0	-	33.0	-	-	시설면적 증)53.0㎡ 건축물 증) 1동
	화장실	1	중구 중산동	-	53.0	-	53.0	-	1	-	33.0	-	33.0	-	-	시설면적 증)53.0㎡ 건축물 증) 1동
관리시설	소 계			-	-	-	-	-	-	-	-	-	-	10	10	
	공원안내판	⑬	중구 중산동	-	-	-	-	-	-	-	-	-	-	9	9	시설부호 변경
	홀안내판	⑭	〃	-	-	-	-	-	-	-	-	-	-	1	1	시설부호 변경
녹지및기타	소 계			16,092.36	11,867.0	-	-	-	-	-	-	-	-	-	-	녹지면적 감)4,225.36㎡
	녹지	-	전지역	16,092.36	11,867.0	-	-	-	-	-	-	-	-	-	-	녹지면적 감)4,225.36㎡

나.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합 계		-	-	12.0	48.0	-	-	-	도로연장 증) 309.7m 도로면적 증) 679.7㎡
변경					321.7	727.7				
당초	소 계		-	-	12.0	48.0	-	-	-	도로연장 증) 61.4m 도로면적 증)183.6㎡
변경					73.4	231.6				
당초	소로	3	1	4.0	12.0	48.0	진입로	완충녹지8	광장4	도로면적 감)4.4.㎡
변경	소로	3	1	4.0	10.6	43.6	진입로	서측경계	광장1	
신설	소로	3	2	3.0	62.8	188.0	연결로	광장1	화장실	도로면적 증)188.0
당초	소 계		-	-	-	-	-	-	-	도로면적 증)496.1㎡
변경					248.3	496.1				
신설	산책로		1	2.0	10.0	20.4	연결로	소 3-2	페어웨이	도로면적 증)20.4㎡
신설	산책로		2	2.0	11.2	21.2	연결로	페어웨이	페어웨이	도로면적 증)21.2㎡
신설	산책로		3	2.0	12.4	24.5	연결로	페어웨이	페어웨이	도로면적 증)24.5㎡
신설	산책로		4	2.0	30.0	60.0	연결로	페어웨이	페어웨이	도로면적 증)60.0㎡
신설	산책로		5	2.0	9.5	17.9	연결로	페어웨이	페어웨이	도로면적 증)17.9㎡
신설	산책로		6	2.0	10.0	20.0	연결로	페어웨이	페어웨이	도로면적 증)20.0㎡
신설	산책로		7	2.0	8.0	16.3	연결로	페어웨이	페어웨이	도로면적 증)16.3㎡
신설	산책로		8	2.0	2.8	5.6	연결로	페어웨이	페어웨이	도로면적 증)5.6㎡
신설	산책로		9	2.0	65.2	130.6	연결로	페어웨이	페어웨이	도로면적 증)130.6㎡
신설	산책로		10	2.0	6.7	13.5	연결로	페어웨이	페어웨이	도로면적 증)13.5㎡
신설	산책로		11	2.0	27.2	54.5	연결로	페어웨이	페어웨이	도로면적 증)54.5㎡
신설	산책로		12	2.0	40.5	81.3	연결로	광장1	페어웨이	도로면적 증)81.3㎡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01. 0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송도국제업무단지 B3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변경 없음)
2. 사업주체의 성명 · 주소(변경없음)
   가. 상 호: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나. 대표자: 서남종(변경 없음)
   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 건설주택의 규모 (변경)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5번지(송도국제업무단지 B3블록)
   나. 대지면적: 26,816.46㎡
   다. 연 면 적: 242,368.27㎡
   라. 건축면적: 12,361.94㎡(증 34.05㎡)
   마.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4층~지상49층/ 3개동/ 775세대
        (84형 255세대, 98형 128세대, 112형 127세대, 121형 256세대, 155형 3세대, 168형 3세대, 179형 3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22개동
      - 업무시설(오피스텔): 지하2층~지상46층/ 1개동/ 255호 (84형 255호)
      - 판매시설(상점): 지하1층~지상3층/ 2개동
4. 사업시행기간: 2021. 04. ~ 2025. 03.(변경 없음)
5. 변경사항: 건축면적(증 34.05㎡) 및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변경
6.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 · 허가 사항 (변경 없음)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3차)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 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송도 F19-1BL 공동주택 신축공사(변경 없음)
2. 사업주체: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변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코스모타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 건설주택의 규모(변경 없음)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5-2번지(송도국제도시 F19-1BL)
   나. 대지면적: 16,743.68㎡
   다. 연 면 적: 59,432.08㎡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 지하2층, 지상 39층 / 4개동 / 342세대
     · 75A형 37세대, 84A형 126세대, 84B형 75세대, 84C형 36세대, 84D형 10세대, 98A형 48세대, 98B형 10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 18개동
4.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가. 2020. 5. 01. ~ 2023. 03. 31.
5. 변경사항: 사업주체 사명, 설계사 대표자 및 건축·구조 오기정정 등
6.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 · 허가 사항(변경 없음)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2022-4389호

- 2023년 인천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인천문화예술단체의 창작의욕 고취, 역량강화, 시민 문화 향수권 신장 및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인천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인천문화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 1. 5.

인천광역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3년 인천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2월

다. 사 업 비 : 2,000백만원

라. 사업분야 : 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문화예술진흥사업 전 분야
(문학·출판, 시각·공연예술 등)

마. 지원규모 : 단체별 4개 사업 이내/ 사업별 70백만원 이내
※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건수 및 금액 결정

2. 신청자격 및 신청범위

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인천시 **전문예술법인·단체**(국·공립 법인·단체 제외)
※ 문학, 영화 분야의 경우 인천시 소재 **비영리법인**

나. 신청범위 : 단체별 4개 사업 이내 / 사업별 70백만원 이내

3. 공고 및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1. 5.(목) ~ 1. 19.(목)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

다. 접 수 처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https://www.losims.go.kr)

라. 문의사항 연락처
- 공고내용 관련 → 인천시청 문화예술과 (☎032-440-4024)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사용 관련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통합콜센터 (☎1522-0660) *내선번호 ④지방재정 → ①차세대지방제정시스템 → 안내

4. 신청서류

가. 지원신청서 1부 [한글파일 필수 제출(배포용일 경우 파일명에 비밀번호 기재)]

나. 단체소개서 1부 [한글파일 필수 제출(배포용일 경우 파일명에 비밀번호 기재)]

다. 사업계획서 1부 [한글파일 필수 제출(배포용일 경우 파일명에 비밀번호 기재)]

라. 프리젠테이션 자료 1부
- 중점 사업 5분, 그 외 사업 단체별 5분
- 중점사업 외 1개 사업일 경우 3분 이내

※ 중점사업 선정은 아래의 **‘5. 사업심사 및 선정’** 참고

마. **‘나. 단체소개서’** 에 기재한 **‘2. 주요활동실적’** 증빙자료 각1부
- 자유양식으로 사업별 5장 이내로 제출

바.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 지정서 1부(문학, 영화 분야는 비영리법인등록증)

사. 안전관리계획
- 사업계획서에는 안전관리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며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3조의9, 공연법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비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5. 사업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및 진행
- 1단계 : 서류심사
- 2단계 : 인터뷰 심사(자체 선정심의위원회)

① 사업계획발표 (중점사업) 파워포인트(ppt)등 자료 활용 발표(5분이내)
(중점사업 이외) 단체별 5분 이내 발표(1건일 경우 3분 이내)

※ 중점사업은 신청사업 중 단체가 임의로 1건 선정

※ 총 1개인 경우 신청사업이 중점사업

② 질의응답

- 3단계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선정

나. 선정기준

- 사업수행역량 및 활동실적
- 사업내용 적절성 및 실행가능성, 사업의 독창성, 홍보계획 및 효과성
- 신청예산의 타당성
- 전년도 사업 평가 등(전년도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 동일(유사)사업에 대하여 2023년도 국비 또는 지방비(문화재단 포함) 지원 사업을 신청했거나 지원받고 있는 사업의 경우 심사 제외(중복지원 불가)
※ 서류심사 결과 및 인터뷰 심사일정은 별도 통보
※ 인터뷰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액에 대한 지원금 조정 가능

다. 선정결과 통보 : 개별 통지

6.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

가.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제출 / 미 제출시 선정자격 취소(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 보조사업자는 인천시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인천시에서 실시하는 회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 및 사용
-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결제전용 체크카드로 구비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해 인천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상시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함
- 보조금 사용은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현금지출 불가), 계좌이체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원천징수를 통해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나. 보조금 사용불가 항목

-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단체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단체 대표자 대상 집행
- 사업과 무관한 비용
- 시상금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과 보조금 관련 법령 또는 규정 등에 따라 보조금 사용이 불가한 항목

인정불가 경비	세 부 내 역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단체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단체 대표자 대상 집행	◦ 단체 대표자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사업과 무관한 비용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기타 사항	◦ 시상금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보조금 관련 법령 또는 규정 등에 따라 보조금으로 사용이 불가한 항목

다. 보조사업 정산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2개월 이내 제출(별도 서식)

7. 기타사항

가. 사업별 의무적 자부담은 없으며, 사업특성별 자율 책정 (자부담을 편성한 경우 보조금 교부시 자부담 확보 증빙 제출)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고 요건 부적합 시에는 미접수 처리함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 및 선정에서 제외

라.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마.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바.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한

사. 선정된 법인(단체)은 사업별 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아. 사업 선정 후 공연법 제11조 및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에 해당되는 축제의 경우 공연법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9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자.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차. 문의사항은 인천시청 **문화예술과 (☎032-440-4024)**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통합콜센터 (☎1522-0660, *내선번호 ④지방재정 → ①차세대지방제정시스템 → 안내)**로 문의

【참고1】지원신청서

2023년도 문화예술단체지원 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단 체 명					
사 업 명	※ 중점사업여부[ ] (O, X 로 표시)				
지원사업분야 (해당 번호[ ]에 v표)	① 문학·출판[ ] ② 미술 [ ] ③ 음악 [ ] ④ 무용 [ ] ⑤ 연극 [ ] ⑥ 영화 [ ] ⑦ 연예 [ ] ⑧ 국악 [ ] ⑨ 사진 [ ] ⑩ 서예 [ ]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사업내용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사업내용 :				

단체등록사항 (전문예술법인·단체/비영리법인)	등록기관		대표자	
	등 록 일	년 월 일		
	소 재 지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기재 방법에 따라 정확히 기입*		
	회 원 수			
	사무국 직원수	명(상근직원 명)		

단체 연락처	대표자	성 명		휴대폰	
		대표전화	*사무실 연락처 기재*	팩스번호	
	실무자 책임자	직 위		성 명	
		휴대폰		e-mail	
	회 계 실무자	직 위		성 명	
		휴대폰		e-mail	

2023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 신청시 제출서류(1, 2번 파일 제출 포함)

1.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발표자료 포함) 각1부.
2. 주요활동실적 증빙자료(사업별 5장 이내) 각 1부
3.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또는 비영리법인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참고2】단체소개서

2023년도 문화예술단체지원 보조사업 단체소개서

1. 단체 현황

단체정보	단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	. . .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단체 주소	(우) 인천광역시		
	주사무소	공공건물[ ], 단체/법인소유[ ], 임대(유상[ ],무상[ ]), 기타[ ]		
	연락처	대표전화 : 032-123-1234 팩스번호 : 032-123-4567		
		신청사업담당자 전화(휴대폰) : 010-****-**** E-mail :		
	홈페이지	http://		
단체소개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정관/회직 제2조)		
	연혁	○ '90.11.10 ○○ 설립(창립) ○ '10.10.28 ○○ 인천시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주요사업	○ 정관 또는 회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 기재 ○ ○		
	조직구성	○처/○국/○과/○팀		
	인력현황	회원수	명 (2023년 1월 현재)	상근 인원 명 유급 인원 명

대표자 및 임원 현황	직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재직기간	주요경력	비고
	대표	나대표	68.10.25.	010-****-****	'16.01.20.~		상근
	임원	한임원	63.01.15.	010-****-****	'17.10.05.~		비상근
	임원	신임둘	80.03.01.	010-****-****	'14.06.29.~		상근

사무국 직원 현황(상근/비상근 구분)				
계	사무국장 (사무처장)	팀장	사원	기타[ ]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예산현황	2022년 결산현황	○ 결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기부금 및 모금활동(%), 국비보조(%) 시비보조(%) 문화재단보조(%) 군·구비보조(%)
	2023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기부금 및 모금활동(%), 국·시비보조(%)

2. 주요 활동 실적

□ 신청사업과 동일(유사)사업 추진실적 (최근 3년 이내,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및 성과	사업비(천원)			보조금 지원기관 (해당시작성)
			계	보조금	자부담	
2020		-기 간 : -장 소 : -참여인원 : -주요성과 :				예)인천시
2021		-기 간 : -장 소 : -참여인원 : -주요성과 :				자체사업
2022		-기 간 : -장 소 : -참여인원 : -주요성과 :				

※ 동일(유사)사업이 연2회 이상 개최된 경우에도 전부기재

□ 국가, 지자체, 재단, 기업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추진실적(최근 2년 이내, 최대 5개)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및 성과	사업비(천원)			지원기관
			계	보조금	자부담	
		-기 간 : -장 소 : -참여인원 : -주요성과 :				예)인천시
		-기 간 : -장 소 : -참여인원 : -주요성과 :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인천 문화재단

□ 단체 자체사업 추진실적(최근 2년 이내, 최대 5개)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및 성과	사업비(천원)	비 고
		-기 간 : -장 소 : -참여인원 : -주요성과 :		

【참고3】사업계획서

2023년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추진 기간	2023. . . ~ . .	공연·전시 등 실제추진기간	2023. . . ~ . .(일)
연속개최 회차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최초 개최연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장소			
사업규모	- 예술단체 : 팀 - 예 술 가 : 명 - 지원인력 : 명	수혜대상자 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 -		
사업추진내용 및 방법	-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		
기대효과	-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 -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5%이내)
총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자부담 (해당시 작성)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자부담 내역	(회비 천원, 기부/후원금 천원, 참가비 천원, 기타 천원)				

2 사업목적

○

○

3 세부추진계획(방법)

□ 세부사업 내용

○

-

○

-

□ 지역성(인천)과 연계된 특성화 (혹은 차별화) 방안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

□ 기존 사업(2022년) 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계획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2022년도 문제점 (혹은 지적사항)	2023년도 개선계획	비 고
-	-	

□ 사업추진일정

일정(기간)	세부추진내용 (활동내용과 추진방법)	비 고
2023. . . ~ . .		
2023. . . ~ . .		

4 사업운영 인력

연번	역 할	성 명	현직 / 주요경력	비 고
1				상근/비상근 여부
2				
3				
4				
5				
6				
7				
8				
9				

5 예산 계획

□ 사업비 예산편성 (구체적으로 작성)

(단위 : 원)

지출항목		금액			산출내역
예산항목	비목	합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인건비	소 계				
	출 연 료				
	기 획 료				
	단 순 인 건 비				
	원 고 료				
	심 사 비				
	·				※기타 필요항목 기재
사 업 진행비	소 계				
	물 품 구 입 비	500,000	500,000	-	·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임 차 비				
	시 상 금				※자부담으로만 편성
	·				※기타 필요항목 기재
	·				
홍보비	소 계				
	인 쇄 비				
	홍 보 비	630	630		· 현수막 70,000원×3개×3회= 630천원
	현 수 막				
	·				※기타 필요항목 기재
활동비 (5%이내)	소 계				
	사 무 용 품 비				
	교 통 비				
	특 근 매 식 비				※자부담 우선 편성
	·				※기타 필요항목 기재

<자부담 편성요령>

○ **'사업수입'**(대회 참가비,출품비 등) 발생 시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작성

○ 자부담을 편성한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 확보 증빙(자부담 통장사본) 제출

<유의사항>

○ 이행보증보험료, 송금수수료는 예산편성(자부담) 불필요(단체 별도예산으로 집행)

○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소요금액 보다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 지출항목은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 활동비로 편성(그 외의 항목 불가)하고 그 안에서 다시 출연료, 물품구입비, 홍보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 불가)
○ 지출항목내 동일 건의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분할하여 편성 불가
【예시 : 리플릿 제작(100만원)을 보조금(50만원)과 자부담 (50만원)으로 계상 불가】
○ 반드시 산출기초 작성 및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기재
○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2023년도 시행된 사항에 한하여 예산 편성(2023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2022년도에 진행된 사전준비과정은 예산편성 불가)
○ 보조금 편성(사용)불가 항목

인정불가 경비	세 부 내 역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단체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단체 대표자 대상 집행	◦ 단체 대표자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사업과 무관한 비용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기타 사항	◦ 시상금,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보조금 관련 법령 또는 규정 등에 따라 보조금으로 사용이 불가한 항목

□ 수입 예산(예상수익금 포함) 및 사용계획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작성)	사용계획	비고
합계					
사업 수입	소 계			※ '사업수입'은 '사업비 예산편성'의 자부담 금액과 일치시켜 작성	
	대회 등 참가비				
	출품비				
	기 타				
민간 재원	소 계				
	단체 회비				
	기업 등 후원금				
	개인 기부금				
	기 타				

6 홍보계획

○

-

○

-

7 기대효과

□ 시민 수혜도

○

-

□ 사업수행 단체 및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

○

-

8 방역 계획

○

-

9 안전관리 계획

□ 안전관리비

○

□ 안전관리조직

○

□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변경등록사항 : 기술인력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주)극동이씨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84호)	정충의	2014. 5. 22.	기술인력 변경	지세준 (수질환경기사) [대체기술사]	좌동
				안현성 (수질환경기사)	좌동
				-	이의연 (수질환경기사)
				송민수 (토목기사)	좌동
				박찬호 (기계설계산업기사) [대체기사]	김영기 (일반기계기사)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자동차)을 「지방세징수법」제71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매대상 물건(자동차) : 07도8069등 106대 (붙임목록 참조)

2. 공매일정

가. 입찰신청 및 공매보증금 납부기간
: 2023. 1. 30.(월) ~ 2023. 2. 6.(월) 14:00

○ 은행 가상계좌 부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입찰참여 마감 당일은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 30분전에는 입찰참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 및 매각결정은 입찰 마감 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

나. 입찰참여 마감 : 2023. 2. 6.(월) 14:00

※ 14:00 이후에 입찰보증금이 입금된 입찰자는 입찰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다.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 2023. 2. 7.(화) 14:00

○ 인천시보 및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홈페이지 게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시보⇒압류자동차 공매결과 공고 클릭)

3. 공매방법

가.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 방식 적용

나. 공매장소 : (주)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

4.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가. 공매공고의 등기(등록)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채권
(지방세징수법 제81조)

①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② 교부 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⑤「근로기준법」 또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⑥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⑦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나. 배분요구종기일 : 2023. 1. 27.(금)

5. 입찰참가 및 등록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 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입찰신청 후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입찰서와 공매보증금은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을 변경하거나 취소 및 반환할 수 없음).

나. 선택 차량에 대한 입찰자격은 다음 계좌에 공매보증금을 매각예정액 10/100 이상을 입금해야 부여됩니다.

※ 주의 : 은행 업무시간외에는 입금이 안 될 수 있으며 은행사정상의 미입금은 미납 처리됩니다.

- 공매보증금 납부(입금)계좌 : 입찰신청 후 입금계좌번호 자동부여 (입찰신청 후 [공매+입찰자명]으로 은행의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공매보증금은 입찰신청을 최종 완료한 후 보증금의 총 합계액을 가상계좌로 입금하셔야 정상처리 됩니다.
- 입찰 후 입금하기 전까지는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총 합계액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을 한 후에 추가 입찰할 경우에는 가상계좌가 추가 발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 발급된 가상계좌로 추가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입금합니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매각결정일 부터 3일 이내(공휴일이면 익 일)에 환불됩니다.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규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하고자 하는 차량의 등록원부를 입찰자가 열람하여 ☎032-114(인천 본거지 차량만 가능)로 배출가스 등급 문의

2) 공매차량보관소에서 현물 확인하여 배출가스번호로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등급조회

바.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매각결정 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와 관련된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6. 낙찰자 결정기준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단독입찰 가능)

나.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

다. 체납자 등 「지방세징수법」제77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자

7. 매수대금 납부기한 : 매각결정 일부터 7일 이내

가. 매수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 최고 절차(10일 이내)를 거친 후, 해당차량은 재 공매 조치합니다.

나. 매수대금 입금계좌는 입찰보증금 입금계좌와는 상이하며 낙찰시 우리 시(공매 담당자)에게 입금계좌 확인 후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 등록한 입찰자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매각결정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는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예- 아파트 동, 호수가 없는 경우 등)

8.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 차 입찰최저가격

9. 공매의 취소, 중지 및 매각결정 취소

가. 공매진행 중 또는 낙찰 완료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와 관계된 지방세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 등을 완납하거나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중지 또는 매각결정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최고액 입찰자에게 매각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특정 사유로 인한 이의신청 등이 있거나 기타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재산의 공유자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공유자에게 매각결정하고, 우선매수 신고한 공유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매수인이 매수대금(잔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0. 공매물건의 인도절차 및 권리이전 비용

가. 매수대금 납부 후 우리 시(공매 담당자)에게 공매물건 이전 등록지를 통보하고 납부 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입니다.

나.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록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 등 또한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정기검사를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일 부터 15일 내 검사를 받는 등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자동차보관소에서 인도되며,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마. 직권말소 자동차는 말소부활 → 검사 → 신규 등록 등의 절차 이후 이전등록이 가능하며, 이전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자동차 점검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입찰자의 책임아래 각종 공부확인 및 자동차보관소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자동차 점검서는 자동차 상태 및 중고차 시세 등을 감안하여 (주)오토마트에서 작성하며,「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 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차령 10년 초과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점검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 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등록 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완납한 때에는 즉시 인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공매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지방세법」의 취득, 등록세 과세대상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 신용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예) 매각결정통지서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 공제 시에도 비공개 (전 차주의 주민(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등)

다. **공매물건 점검과정에서 자동차 급발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안전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 소유권이전 시 기존 번호판으로 이전등록 하시고. 번호판이 없는 경우(분실)에는 해당등록 관청에서 신규(전국)번호판으로 재교부 바랍니다.**

마. **차량 유의사항!! 필독하시어 차량상태 및 등록기관 확인 후 입찰에 신중하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바. 낙찰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 매각결정통지서 및 최고납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 소유권이전등록 후 보관소에서 차량인수 시 필히 번호판 부착 및 봉인 후 출고하시기 바랍니다.(번호판 미 부착 운행 시 과태료 부과대상)**

아. 차량 보관 장소 : (주)오토마트 보관소 (☏ 032-578-0442)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통합징수팀 자동차 공매 담당자(☏ 032-440-8444, 84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공매 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모델연도	차량평가액	공매차수	입고일
1	07도8069	카니발	2013	2,800,000	3	2022-01-21
2	17루8352	벤츠S63	2008	1,600,000	3	2022-02-04
3	249어9596	G80	2020	25,600,000	3	2022-01-05
4	45어6319	싼타페	2012	2,000,000	3	2022-02-10
5	50무9176	BMW328i	2008	1,200,000	3	2022-01-18
6	66더6186	벤츠S350	2006	1,600,000	3	2022-02-04
7	16우3111	쏘렌토	2003	630,000	2	2022-04-04
8	38저8733	BMW 528i	2008	900,000	2	2022-07-22
9	40버8434	K7	2013	3,150,000	2	2022-04-12
10	57너1328	SM7	2011	1,080,000	2	2022-04-19
11	40우2310	투싼	2013	2,700,000	2	2022-04-18
12	42우6918	스포티지	2004	540,000	2	2022-04-13
13	46머9811	A5 2.0	2009	1,800,000	2	2022-04-19
14	53러5638	그랜저	2018	13,500,000	2	2022-07-14
15	55가0619	K5	2012	1,800,000	2	2022-04-26
16	80더9396	라보	2010	450,000	2	2022-04-13
17	90저9384	스타렉스	2015	5,400,000	2	2022-04-16
18	02버9874	그랜저XG	2005	500,000	1	2022-06-07
19	02소8403	쏘나타	2014	2,000,000	1	2022-06-03
20	02우2071	마티즈0.8SAT	2006	300,000	1	2022-06-15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모델연도	차량평가액	공매차수	입고일
21	03거9559	쎄라토	2006	500,000	1	2022-06-21
22	04너5000	싼타페	2006	700,000	1	2022-06-07
23	06보4982	그랜저TG	2006	600,000	1	2022-06-24
24	08조3800	AUDI A6 2.4	2006	800,000	1	2022-06-08
25	09더1673	오피러스	2007	700,000	1	2022-06-13
26	09머8540	라세티	2002	400,000	1	2022-06-23
27	09무4790	베라크루즈	2008	1,000,000	1	2022-06-17
28	10더1548	그랜드체로키	2007	700,000	1	2022-06-14
29	10로3459	렉서스ES300	2002	600,000	1	2022-06-16
30	11고3006	그랜저	2006	600,000	1	2022-06-21
31	150버6399	k5	2011	700,000	1	2022-05-31
32	19라4677	그랜저	2009	700,000	1	2022-05-30
33	19부9590	인피니티M35	2006	600,000	1	2022-06-29
34	21마4512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	2018	63,000,000	1	2022-06-07
35	22거8629	모닝	2015	2,000,000	1	2022-05-31
36	23보9184	베리타스3.6	2010	1,000,000	1	2022-05-31
37	24저5274	스포티지	2007	600,000	1	2022-06-17
38	25가8047	렉스턴	2003	400,000	1	2022-05-26
39	26라9311	BMW 528i	2008	800,000	1	2022-06-03
40	26오9903	에쿠스	2015	3,000,000	1	2022-05-25
41	26조4536	카니발 Ⅱ	2004	600,000	1	2022-05-25
42	27구2353	SM3	2002	400,000	1	2022-06-30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모델연도	차량평가액	공매차수	입고일
43	27수5259	730d	2011	3,000,000	1	2022-06-30
44	281마9756	G70	2020	26,000,000	1	2022-06-28
45	28마1500	k7	2011	1,000,000	1	2022-05-25
46	28오6953	sm5	2008	700,000	1	2022-06-07
47	28오9111	BMW M5	2013	13,000,000	1	2022-06-29
48	29두9761	프라이드	2008	500,000	1	2022-06-03
49	29저4863	쏘나타	2015	3,000,000	1	2022-05-26
50	30러8384	Passat 2.0 TDI	2006	500,000	1	2022-06-14
51	30버4209	캡티바2.2D디젤	2011	700,000	1	2022-05-25
52	31두1271	ACCORD 3.5	2008	600,000	1	2022-06-07
53	34도3109	아반떼	2012	700,000	1	2022-06-22
54	36노3714	아반떼XD	2000	400,000	1	2022-06-22
55	38라4869	마티즈	2005	300,000	1	2022-06-21
56	38러1164	싼타페	2015	8,000,000	1	2022-06-10
57	41나7233	투싼(TUCSON)	2004	600,000	1	2022-06-14
58	41주1542	S500 4Matic L	2014	15,000,000	1	2022-06-22
59	45루1920	라세티	2006	500,000	1	2022-06-21
60	48고5301	C200K	2008	700,000	1	2022-06-24
61	50주1409	로체	2010	700,000	1	2022-06-07
62	52머6440	아반떼	2007	400,000	1	2022-06-10
63	52저9245	SM5	2014	2,500,000	1	2022-06-16
64	53머7012	그랜저	2005	600,000	1	2022-06-28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모델연도	차량평가액	공매차수	입고일
65	54우5249	싼타페	2006	700,000	1	2022-06-28
66	56도0844	에쿠스	2012	2,500,000	1	2022-05-26
67	56마4612	쏘나타	2011	700,000	1	2022-06-10
68	61부3971	레조	2004	500,000	1	2022-06-16
69	62다9381	체어맨	2005	700,000	1	2022-06-22
70	64보3489	재규어	1996	700,000	1	2022-06-10
71	69나1608	오피러스	2010	700,000	1	2022-06-15
72	69너6712	스타렉스	2007	700,000	1	2022-06-16
73	75가9502	그랜드카니발	2007	700,000	1	2022-06-16
74	76구1433	그랜드카니발	2010	800,000	1	2022-06-13
75	79소7419	스타렉스12인승	2015	6,000,000	1	2022-06-29
76	86구5876	포터Ⅱ	2005	700,000	1	2022-06-09
77	86누2286	포터 더블캡	2006	700,000	1	2022-06-20
78	87수9837	봉고3	2013	3,000,000	1	2022-06-29
79	93로8124	포터Ⅱ	2017	6,000,000	1	2022-06-21
80	97로5807	코란도스포츠	2016	4,000,000	1	2022-06-17
81	서울45머7700	베르나	2001	400,000	1	2022-05-25
82	인천32마4674	SM520	2002	500,000	1	2022-06-08
83	인천35라4504	아반떼	1996	300,000	1	2022-06-30
84	인천35러6488	싼타모플러스	2002	400,000	1	2022-06-08
85	인천80러5411	포터	2002	600,000	1	2022-06-30
86	55오8379	카렌스	2013	700,000	1	2022-07-01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모델연도	차량평가액	공매차수	입고일
87	52마6632	테라칸	2002	600,000	1	2022-07-06
88	68노0172	쏘나타	2010	700,000	1	2022-07-06
89	25라6105	싼타페	2011	800,000	1	2022-07-07
90	43두6558	쏘울	2010	700,000	1	2022-07-07
91	54수1493	토스카	2007	500,000	1	2022-07-07
92	11다6333	아반떼	2007	500,000	1	2022-07-12
93	28무6829	그랜저	2009	600,000	1	2022-07-13
94	21로1564	싼타페	2009	1,000,000	1	2022-07-13
95	49오5866	EF쏘나타	2003	500,000	1	2022-07-12
96	31거0899	로체	2009	700,000	1	2022-07-13
97	50부5425	마티즈	2010	300,000	1	2022-07-12
98	53구8772	BMW420d	2015	10,000,000	1	2022-07-07
99	53러7515	싼타페	2020	19,000,000	1	2022-07-08
100	64부0576	트라제XG	2002	250,000	1	2022-07-13
101	33오9349	투싼	2008	600,000	1	2022-07-14
102	40로7742	모하비	2011	2,000,000	1	2022-07-15
103	03거8852	라세티	2006	500,000	1	2022-07-18
104	17두5907	쏘나타	2007	700,000	1	2022-07-19
105	52조1695	마티즈	2007	300,000	1	2022-07-19
106	25조1661	스포티지	2005	600,000	1	2022-07-2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8호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공 고 명: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3. 1. 6. ~ 1. 20.(15일간)

○ 공고대상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 분 내 용	비고
1	주식회사 포**렉 [한 * 민]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5*5번길 2*(금곡동)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영업정지 1개월	

○ 공고 대상자는「전기공사업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대상자로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께서는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기간 후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 전기전력팀(☎ 032-440-4359)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0호

일반수도사업인가[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2단계)] 열람 공고

옹진군 북도면 지역 일원에 지방상수도【사업명: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2단계)】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법」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3. 1. 6.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예정지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 장봉리 일원

2. 일반수도사업인가 내용

○ 목 적 : 옹진군 북도면(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

○ 급수구역 : 옹진군 북도면 일원

○ 목표연도 : 2024년 1월

○ 급수인구 : 1,000명(1인당 1일 급수량 381ℓ)

○ 급 수 량 : 400㎥/일

○ 공급계통 : 풍납취수장 → 공촌정수장 → 공항신도시배수지 → 급수구역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일반수도사업

○ 명칭 :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2단계)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영구 797.3㎡ / 임시 16,168.4㎡

○ 사업규모

- 해저관로(모도～장봉도) : D100mm, L=2.57km
- 육상관로(장봉도) : D100mm, L=6.67km
- 가압장 1개소 : 장봉도 Q=308㎥/일

5.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도화동) 상수도사업본부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일반수도사업인가일 ～ 2023. 12.

7. 관계서류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 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032-720-2123), 시설부(☏032-720-2155)
- 옹진군청 건설과(☏032-899-2933)

○ 의견제출 : 일반수도사업인가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용지조서 참조

용 지 조 서

[해저추진 및 추진기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자			비고
					임시	영구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관계	
Ⅰ. 옹진군 모도리												
1	모도리	80-2	도	4,025	73.4	1.8	국(농림축산식품부)	-				추진기지
2	모도리	80-11	유	15,528	471.0	0.4	국(농림축산식품부)	-				
3	모도리	255-3	잡	3,565	45.5	5.7	국(기획재정부)	-				
4	모도리	산83-3	임	1,329	138.7	17.1	박*	옹진군 북도면 신도로***번길 **				등기부X
5	모도리	255-2	학	1,947	25.1	3.4	허**	미추홀구 주승로 ***, ***동 ****호	강**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	근저당권 (+지상권)	
6	모도리	산83-9	임	234	10.4	1.3	박**	미추홀구 소성로***번길 *, ****호(**아파트)				
7	모도리	254	전	648	20.2	2.5	박**	서구 서곶로 **, *동 ***호				
8	모도리	380	도	185	3.0	0.4	국(농림축산식품부)	-				
9	모도리	252-2	전	444	29.4	3.7	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 ***동 ****호	****농업 협동조합	동구 샛골로 ***	근저당권 (+지상권)	
10	모도리	252	대	548	12.4	1.6	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 ***동 ****호				
11	모도리	산75	임	18,611	343.0	42.9	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배다골길 ***	**농업 협동조합	고양시 덕양구 토담로 **	근저당권 (+지상권)	
12	모도리	289-1	과	291	4.0	0.5	백**	옹진군 북도면 모도로 ***-**	**농업 협동조합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 (+지상권)	
13	모도리	289-2	과	96	6.4	0.8	백**					
14	모도리	289	과	499	36.8	4.60	백**					
15	모도리	290	전	261	8.1	1.0	박**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길 ** *동 ***호				
16	모도리	291-1	과	428	12.0	1.5	백**	옹진군 북도면 모도로 ***-**	**농업 협동조합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 (+지상권)	
17	모도리	291	과	2,134	110.9	13.9	백**					
18	모도리	292	대	168	3.1	0.3	백**	옹진군 북도면 모도로 ***-**				
19	모도리	292-1	과	93	12.2	1.6	백**	옹진군 북도면 모도로 ***-**	**농업 협동조합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 (+지상권)	
20	모도리	294	전	588	8.9	1.1	박**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길 ** *동 ***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자			비고
					임시	영구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관계	
Ⅱ. 옹진군 장봉리												
21	장봉리	산8-14	임	1,984	26.6	3.3	오**	서울 성북구 종암로**길 **				
							오**	서울 성북구 정릉로***길 *-**				
22	장봉리	20-57	임	750	26.0	3.3	오**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 ***-*	**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	근저당권	
23	장봉리	20-58	임	450	29.9	3.7	오**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 ***-*				
24	장봉리	산8-13	임	844	12.0	1.5	공**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 **				691.2/9917
							김**	서울 양천구 신목로*길 **	*** 새마을금고	서울 양천구 신목로 **	근저당권	1381/9917
							김**	연수구 청학로*번길 *				1052/9917
							박**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길 ** 가락금호아파트				2255.3/9917
							배**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번길 **-*				691.2/9917
							심**	경기도 부천시 작동로 **번길 **				691.2/9917
							원**	영등포구 도신로 ** 현대3차아파트 ***-****				1081.5/9917
							유**	광주 북구 유림로 *** 삼익아파트 ***-****				691.2/9917
							조**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 문래동미원아파트				691.2/9917
							황**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 네오빌 *단지				691.2/9917
25	장봉리	산8-2	임	981	50.9	6.4	이**	옹진군 북도면 신도로 ***	**** 원예협동조합	경기도 부천시 심곡로**번길 **	근저당권 (+지상권)	
26	장봉리	20-27	도	5836	55.9	7.0	공(옹진군)	-				
27	장봉리	20-63	임	619	24.5	1.7	공(옹진군)	-				
28	장봉리	산9	임	56,541	1121.8	0	이**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번길 **				

[육상 관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임시	편입면적(㎡) 영구	소유자 성명, 명칭	소유자 주소	이해관계자 성명, 명칭	이해관계자 주소	이해관계자 권리관계	비고
Ⅰ. 옹진군 장봉리												
1	장봉리	20-19	도	1,245.2	147.7	7.4	공(옹진군)	-				
2	장봉리	20-27	도	5,830.6	642.5	32.2		-				
3	장봉리	20-63	임	536.6	85.0	4.2		-				
4	장봉리	산9	임	56,255.2	190.2	9.5	이**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번길 **				
5	장봉리	20-64	임	416.1	59.6	3.1	공(옹진군)	-				
6	장봉리	20-43	도	1,187.5	144.2	6.6		-				
7	장봉리	32-10	구	109.6	3.6	0.2	임**	옹진군 북도면 모도로**번길 **				
8	장봉리	32-3	도	5,105.8	912.0	41.7	공(옹진군)	-				
9	장봉리	59-5	도	1,224.6	344.2	14.1	국(국토교통부)	-				
10	장봉리	산38-7	도	103.6	36.7	1.8	공(옹진군)	-				30/32
							전**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	김**	중구 흰바위로 ** 영종풍림아이원아파트	근저당권 (1/3)	1/32
									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길 **, *-****	근저당권 (1/3)	
									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	근저당권 (1/3)	
							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				1/32
11	장봉리	산38-3	도	2,377.1	552.8	22.3	공(옹진군)	-				30/32
							전**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	김**	중구 흰바위로 ** 영종풍림아이원아파트	근저당권 (1/3)	1/32
									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길 **, *-****	근저당권 (1/3)	
									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	근저당권 (1/3)	
							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				1/32
12	장봉리	149-4	도	378.4	48.6	2.3	공(옹진군)	-				
13	장봉리	154-4	도	206.3	37.0	1.7	국(국토교통부)	-				
14	장봉리	145-2	도	30,394.4	3647.9	181.1	공(옹진군)	-				
15	장봉리	산60-6	도	4,758.2	647.5	31.9	공(옹진군)	-				1/3
							장**	미추홀구 독배로***번길 **-**				1/3
							노**	미추홀구 숭의동 ***-*	**신용 협동조합	중구 제물량로 ***	근저당권	1/3
16	장봉리	산103-1	도	1,695.3	257.4	12.9	국(국토교통부)	-				
17	장봉리	192-9	도	3,220.4	400.9	19.1	공(옹진군)	-				
18	장봉리	1326-3	도	1,315.0	438.8	19.1	국(기획재정부)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자			비고
					임시	영구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관계	
19	장봉리	191-1	도	1,350.3	442.3	22.1	공(옹진군)	-				
20	장봉리	258-1	도	222.3	89.5	4.2		-				
21	장봉리	259	도	32.7	18.9	1.0		-				
22	장봉리	1328	도	551.9	173.2	9.1	국(농림축산식품부)	-				
23	장봉리	239-11	도	19.1	4.42	-	공(옹진군)	-				
24	장봉리	241-1	도	79.1	3.18	-		-				
25	장봉리	239-10	도	19.5	10.11	-		-				
26	장봉리	243-1	도	99.7	10.0	-		-				
27	장봉리	1327	구	3,964.1	18.7	0.85	국(교육부)	-				
28	장봉리	1326	도	1,036.7	-	23.61	국(기획재정부)	-				
29	장봉리	338-2	도	4,318.5	7.1	-	공(옹진군)	-				
30	장봉리	1117-2	도	57.2	14.8	-		-				
31	장봉리	1175-11	도	38.5	0.6	-		-				
32	장봉리	1175-5	도	12.5	4.41	-		-				
33	장봉리	1117-3	도	11.4	6.4	-		-				
34	장봉리	1118-1	도	19.1	43.1	3.0		-				
35	장봉리	1118-4	도	79.1	1.0	-		-				
36	장봉리	1175-3	도	19.5	6.8	-		-				
37	장봉리	1119-6	도	99.7	5.9	-		-				
38	장봉리	1114-2	도	3,964.1	7.7	-		-				
39	장봉리	1172	도	1,036.7	3.6	-		-				
40	장봉리	1171-3	도	4,318.5	3.4	-		-				
41	장봉리	1119-2	도	57.2	10.3	-		-				
42	장봉리	1170-2	답	38.5	4.6	-		-				
43	장봉리	1120-1	도	12.5	8.6	-		-				
44	장봉리	1111-1	도	11.4	6.9	-		-				
45	장봉리	1124-3	도	43.1	6.4	-		-				
46	장봉리	1109-2	도	36.8	5.4	-		-				
47	장봉리	1125-6	도	9.6	4.6	-		-				
48	장봉리	1108-1	도	7.2	1.1	-		-				
49	장봉리	1102	도	68.6	1.1	-	김**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번길 *				
50	장봉리	1100-8	도	10.4	2.7	-	공(옹진군)	-				
51	장봉리	1100-3	도	11.7	1.7	-		-				
52	장봉리	1096	도	54.8	14.1	0.5	임**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 ***-*				
53	장봉리	1331	도	1,001.4	219.5	11.6	국(농림축산식품부)	-				
54	장봉리	1082-3	도	42.7	8.7	-	공(옹진군)	-				
55	장봉리	1082-2	도	41.3	26.8	1.6		-				
56	장봉리	1050-4	도	65.6	1.5	-		-				
57	장봉리	1081	대	1,801.8	8.3	-		-				
58	장봉리	1052-1	도	50.6	11.7	-		-				
59	장봉리	1080-1	대	39.3	1.1	-		-				
60	장봉리	1053-1	도	50.0	3.6	-	이**	-				등기부등본 없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임시	편입면적(㎡) 영구	소유자 성명, 명칭	소유자 주소	이해관계자 성명, 명칭	이해관계자 주소	이해관계자 권리관계	비고	
61	장봉리	1054-1	도	10.2	1.3	-	김**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번길 *					
62	장봉리	1055-1	도	23.8	3.3	-	조**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 ***-*					
63	장봉리	1056-1	도	98.3	36.3	1.8	정**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					
64	장봉리	1057-1	도	49.9	24.2	1.2	국(국토교통부)	-					
65	장봉리	1059-1	도	36.8	15.6	0.8	김**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 ***					
66	장봉리	1368	도	1,318.4	272.4	13.6	공(옹진군)	-					
67	장봉리	288	도	501.3	37.4	1.9	김**	서구 서곶로***번길 **	이**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회진로 ***-**	근저당권		
68	장봉리	462-7	도	562.9	115.1	5.8	공(옹진군)	-					
69	장봉리	산166-4	임	312.4	12.6	0.6		-					
70	장봉리	산167-3	임	414.8	109.5	5.5	최**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 ***-**	심**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번길 **-**	근저당권	가등기: 심**	3719/44628
									**은행	서울 중구 통일로 ***	근저당권		
							공(옹진군)	-					40909/44628
71	장봉리	464-1	전	287.2	91.9	4.7	공(옹진군)	-					
72	장봉리	814-11	도	13770.78	2422.8	114.9		-					
73	장봉리	471-1	도	151.11	20.8	1.0		-					
74	장봉리	472-1	도	324.34	73.9	3.8		-					
75	장봉리	935-1	도	30.44	18.76	1.06	김***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번길 **-*					
76	장봉리	889-1	도	118.51	63.88	3.32	김**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번길 ***					
77	장봉리	546-4	임	92.48	20.7	1.5	공(옹진군)	-					
78	장봉리	산283	도	68.58	7.6	0.3	국(농림축산식품부)	-					
79	장봉리	547-1	과	1521.45	17.8	1.0	송**	연수구 새말로**번길 **-*, *층					
80	장봉리	1339	구	869.96	0.2	-	국(농림축산식품부)	-					
81	장봉리	562-6	답	503.14	0.1	-	신**	서울 노원구 동일로 ****	강**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번길 ***동 ***호	근저당권		
82	장봉리	562-5	답	13.01	1.4	-	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동 ****호					1/2
							이**						1/2
83	장봉리	973	도	3861.06	174.8	8.2	공(옹진군)	-					
84	장봉리	868-5	도	44.5	19.6	1.1	고**	선화동 ***					
85	장봉리	868-3	도	30.38	0.7	-	고**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					등기부등본 없음
86	장봉리	859-1	대	47.83	36.7	2.1	공(옹진군)	-					
87	장봉리	892	도	21.72	2.8	-		-					
88	장봉리	891	도	59.68	9.8	0.5		-					
89	장봉리	912-1	도	73.46	14.2	0.9	김**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번길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3.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 말소사항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말소 일자	주관 부서	비 고
제2006-0- 인천광역사-25 (2006. 7. 20.)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연대회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87번길 7, 알엔디센터 2층(학익동)	하석용	- 공존형사회 모델의 연구, 개발, 홍보와 실현 - 공존형 시민 사회운동 모델의 연구, 개발 및 실천 - 정부와 지방정부에 제안하기 위한 정책대안 개발 - 공존사회 구축을 저해하는 민원 해소	2023.1.3.	민 간 협력과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5호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공 고 명: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3. 1. 4. ~ 1. 18.(15일간)

○ 공고대상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 분 내 용	비고
1	주식회사 부**기 [조 * 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5*1번길 6-2, *층(효성동)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록취소	

○ 공고 대상자는「전기공사업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대상자로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께서는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기간 후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 전기전력팀(☎ 032-440-4359)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8호

특정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사실 및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11월 공해차량 단속시스템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위반사실 및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2023년 1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 고 명 : 특정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사실 및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경유자동차운행제한) 및 제49조(과태료)
   나.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6조(과태료 부과)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라. 지방세기본법 제31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제33조(공시송달)
   마.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대상 : 상시운행제한('22.11월) 위반사실 및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 송달불가 64건, '공시송달 대상' 붙임 문서 확인

4. 공고기간 : 2023. 1. 5. ~ 2023. 1. 18.(14일간)

5. 의견제출 및 납부기간 : 2023. 1. 5. ~ 2023. 1. 31.

6. 공고내용

가. 경고(위반사실통지) 대상(1차 위반)

- 처음 1회 위반 시에는 저공해조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반통지하고 30일 동안 행정지도하며 그 이후 위반 시에는 매 위반 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누적부과액 최대 200만원)
- 향후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지도기한까지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를 완료하거나,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대상(2차 위반)

- 처분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증빙자료 첨부)가 있을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의견제출기간 내 자진납부 시 부과예정액의 20% 감경됩니다.

7. 의견제출처

가. 주 소 : 인천광역시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나. 문의전화 :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담당자 채유림

(☎ 032-440-8390, Fax 032-440-8749)

붙임 1. 공고대상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저공해조치유예신청서(서식) 1부. 끝.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역	
						위반횟수	처분내용
1	(주)휴*랜*	88보280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19일, 13시46분26초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713-5 안성방면 2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2	김*석	인천99아325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30일, 19시32분25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4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3	최*호	87머794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30일, 03시08분36초	서울특별시 강변북로(서울방향) 4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4	홍*표	80도941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29일, 13시13분53초	경기도 안산시 팔곡지하차도(안산방향) 2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5	이*이	94모102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18일, 13시07분44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4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6	이*노	90머164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17일, 05시26분11초	인천광역시 삼산체육관 앞 4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7	전*학	인천81마520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20일, 15시49분58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아암대로 2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8	이*형	89버509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21일, 13시35분42초	인천광역시 소래대교 3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9	윤*만	경기93루621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12일, 18시38분25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1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10	(주)퍼*트*발	91부642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23일, 13시01분27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1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11	장*우	86무759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28일, 16시11분09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3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12	(주)지*씨*디	94다372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26일, 07시49분22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산 6-3(2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13	김*연	86러315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26일, 13시45분14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2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14	오*선	87라322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21일, 12시04분21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산 6-3(1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15	코*아*질*발(주)	86구115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24일, 17시05분59초	인천광역시 일신동주민센터 앞 3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16	변*혁	84가371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30일, 17시59분59초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관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30(3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17	이*군	91고475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04일, 17시07분12초	서울특별시 동일로 3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역	
						위반횟수	처분내용
18	정*교	86누381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25일, 11시03분54초	인천광역시 신상교앞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06-212(2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19	임*성	80무204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29일, 09시54분47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2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20	양*성	81어264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03일, 08시15분24초	경기도 성남시 농수산물센터사거리 3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21	이*호	56모509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13일, 14시00분41초	인천광역시 일신동주민센터 앞 2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22	권*민	43마522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03일, 14시11분37초	인천광역시 KCC아파트 1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23	곽*덕	24가208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26일, 13시57분16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4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24	정*엽	27러661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29일, 07시05분49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2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25	염*선	57마402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06일, 08시42분46초	서울특별시 경인고속도로 4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26	유*규	29소696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18일, 22시14분15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1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27	이*건	41구680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14일, 13시40분43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아암대로 1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28	황*달	21조648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22일, 19시57분52초	인천광역시 서운체육공원 3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29	김*국	01도269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08일, 12시53분19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3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30	이*돈	26너121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30일, 07시17분59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4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31	이*	78오810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19일, 23시38분50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4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32	손*식	73보236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18일, 16시17분08초	서울특별시 청계산로 1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33	정*연	73가846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11일, 20시09분38초	인천광역시 소래대교 2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34	김*구	73우227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19일, 13시10분13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산 6-3(2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역	
						위반횟수	처분내용
35	(주)연*장*식*	73부550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12일, 17시39분45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항방향→송도)(1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36	윤*호	86부552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28일, 11시58분36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2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37	한*호	80소553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13일, 11시59분04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산 6-3(2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38	(주)훼*리*합*설	91머474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22일, 14시21분52초	서울특별시 연희IC(성산로) 연희IC (성산로) 2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39	A*I A K*U*I*R A* J*B*R*	06주465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30일, 18시02분29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2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40	신*근	41가269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26일, 13시55분11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3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41	지*녀	51조146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30일, 17시42분03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산 6-3(2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42	박*원	15가758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24일, 10시46분28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1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43	백*돈	61라989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20일, 17시10분13초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광사IC) 2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44	Q*A* Y*N*W*N	04서965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24일, 15시29분46초	서울특별시 강변북로(일산방향) 2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45	김*만외1(김*규) *채권면제	03조361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07일, 17시11분30초	경기도 성남시 복정교 2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46	김*주	07더381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15일, 08시52분52초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139-7 1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47	심*보	07나766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26일, 14시44분56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산 6-3(1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48	이*호	28버176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10일, 10시46분26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5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49	최*영	65서600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26일, 12시12분08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1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50	K*N A*E*E*	74마129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25일, 21시47분16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항방향→송도)(1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51	A*S*R*K*U*O* K*A*R*L*O	72저857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25일, 14시11분22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3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역	
						위반횟수	처분내용
52	박*수	76두345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30일, 21시30분26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2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53	김*훈	89우468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15일, 17시06분18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3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54	이*희	80서606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16일, 09시26분43초	경기도 수원시 물이랑교사거리(수원방면) 3차선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55	박*수(공채면제)	28러326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15일, 13시23분51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2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56	박*필	38너237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28일, 00시57분54초	인천광역시 일신동주민센터 앞 4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57	이*천	43가205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08일, 19시07분59초	인천광역시 삼산체육관 앞 4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58	윤*영	16우593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19일, 17시07분47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2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59	하*봉	06더488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06일, 14시08분09초	인천광역시 한미반도체 앞 3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60	손*경	09머347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30일, 11시39분50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1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61	(주)초*토*	73오142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14일, 08시12분26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3차로	2차이상	과태료 200,000원 (감경160,000원)
62	이*희	06버912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15일, 14시08분47초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139-7 2차로	1차	경고(위반사실)
63	김*리*	서울48구228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22일, 22시08분30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3차로)	1차	경고(위반사실)
64	서*복	91부651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11월17일, 12시00분14초	경기도 시흥시 옥구공원(수원방면) 2차선	1차	경고(위반사실)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처분대상 차량번호:)
	의 견	
	기 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공해 조치 유예 신청서

※ 조치기한까지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를 이행하지 않고, 조치 유예를 원하는 경우만 제출
☞ 상시단속만 유예됨(비상 및 계절관리제, 서울녹색교통지역 진입 시 운행제한 단속됨)
※ 사유 1개만 선택가능하며, 사유 변경으로 재신청 불가
매연농도 10%이하 사유만 재연장 가능, 재연장 원할 시 유예기간 내 신청서 제출필요
타사유 재연장 불가
*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차량은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이 불가

소유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팩 스 번 호 :) (휴대폰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차 종	
	차 명		원 동 기 형 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여부		☐ 동의함 ☐동의안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제출한 개인정보를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관련 업무에 활용				

유예사유 1개만 선택가능.	☐ 마지막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 측정치가 10%이하인 경우 - 매연 측정치 %, 다음 배출가스 검사일(. .)까지 유예 ☐ 매연저감장치 제작사에 문의결과 차량에 부착가능한 저감장치가 없을 경우 ☞ 제작사에서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 차량분실, 번호판영치 등 현재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 ☞ 관련기관 신고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 1년 이내에 폐차를 원하는 경우 ☞ 1년 유예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시 청 대기보전과(우21554)
※ FAX접수 : 032-440-8749 e-mail주소 : a4408749@korea.kr
☞ 서식다운 : 인천시(http://www.incheon.go.kr) >새소식> 5등급자동차 저공해조치 안내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0호

도시계획시설(장미근린공원 2, 3단계)사업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장미근린공원 2,3단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23. 1. 9.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653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 명 칭: 장미근린공원 조성사업(2, 3단계)

3. 면적 및 규모

○ 장미공원(2단계): 6,334㎡

○ 장미공원(3단계): 32,352.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장

○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329(북성동 1가)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2.12.3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변경등록사항 : 기술인력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에스지이(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제126호)	박창호	2020. 4. 24.	기술인력 변경	김규랑 (대기환경기사) [대체기술사]	오정선 (대기환경기사) [대체기술사]
				윤지숙 (대기환경기사)	좌동
				유명현 (산업위생관리기사)	좌동
				이명근 (화공기사1급)	좌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4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공고

1) 업 체 명 : (주)태은

2) 대 표 자 : 김윤경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810번길 26-19 (가좌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128호

6) 등 록 일 자 : 2020. 2. 13.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23. 1. 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공고

1) 업 체 명 : (주)알파환경

2) 대 표 자 : 최철중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75번길 67 (논현동, 남동공단18블럭6로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130호

6) 등 록 일 자 : 2020. 2. 26.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23. 1. 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7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사업자	대표자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비고
알앤제이개발 주식회사	박종섭, 이대숙	2023. 1. 4.	인천230001	300,000,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30번길 54, 제5층 제씨501호 (송도동, 닥터플러스몰)	

2023년 1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8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사업자	대표자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비고
인천논현역개발 주식회사	임태모	2023. 1. 4.	인천230002	3,000,000,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35, 제1층 제에이 제101호 (논현동, 칼리오페)	

2023년 1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3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2-116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대2-116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3. 1. 9.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4-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대2-116호선)사업

○ 명칭: 원창동 394-17번지 일원 물류센터 변속차로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701.5㎡

○ 규모: 대로2-116호선 변속차로 및 보도설치 L=82.70m, B=9.75m

4. 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주식회사 우리은행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51(회현동 1가)

5. 사업 착수 및 준공일

❍ 2022.10.11. ~ 2023. 1. 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사항	
1	서구 원창동	394-17	창	14,551.7	164.3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 1가)				
2	서구 원창동	394-18	창	14,229.8	1.4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 1가)				
합계		2필지		28,781.5	165.7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 2-116호선 변속차로 및 보도 L=82.70m, B=9.75m

8. 관계서류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도로과(☏032-440-3724), 서구청 도시계획과 (☏032-560-4763)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39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320471	주식회사 제이엠테크닉스 대표 정은미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83, 후이즈스마트타워 401호(고잔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40호

도시계획시설(산밑말근린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산밑말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23. 1. 9.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산1-3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 명 칭: 산밑말근린공원

3. 면적 및 규모

○ 면 적: 29,547.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2.12.3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4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9.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안) 주요 내용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154번지 일원

○ 결정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28	27	국지도로	538	석남산139-15 (대로1-24)	석남223-155 (대로2-29)	일반도로		인고1406호 (88.11.25)	
변경	대로	3	28	27	국지도로	554	석남동257-17 (대로1-78)	석남223-155 (대로2-29)	일반도로		인고1406호 (88.11.25)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28	대로3-28	○ 연장 변경 - L=538→L=554m(증 16m) ○ 기점 명칭 변경 - 대로1-23→대로1-78	○ 기 접속도로인 대로 1-78호선의 변경에 따라 도로 연결을 위한 도로 기점 및 연장 변경 ○ 대로 1-24호선 폐지 및 1-78호선 신설에 따른 기점 명칭 변경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332호, 2020. 8.31.)

2. 열람 기간 및 의견 제출 방법

○ 열람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 제출

-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03, 남동구 정각로 29)

4.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 관계도면: 참고1, 2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1 위치도

N
청라국제도시
가정역
가정중앙시장역
IC
남청라IC
인천그랜드CC
SK인천석유화학
인천북항
내로 1-78
내로 3-28
1.5Km
3Km
인천지하철2호선
서부여성회관역
400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현대제철
인천기차역

참고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

기 정

변 경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43호

인천광역시 청원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청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인천광역시 청원심의회 위원**을 「인천광역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9일

인천광역시장

1. 모집인원 : 4명

2. 응모자격(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가. 변호사

나. 인천시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인천시정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

나. 선정기준

○ 자격기준에 적합하고 전문성과 업무 연계성이 있는 사람

4.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 지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라.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 서식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5.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3. 1. 9.(월) ~ 1. 25.(수) <09:00~18:00, 토·일 제외>

나. 접 수 처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민원동(1층) 시민봉사과 청원업무 담당자

다. 접수방법 : 우편(등기),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bsc72000@korea.kr, hbjy25@korea.kr)

※ E-mail로 제출시 내용 작성하여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 후 전화연락 (☎032-440-2581~3, 2586)

6. 대상자 선정통지 : 개별통지

7.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자격증은 사본)하여야 하며,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는 원본문서를 스캔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다.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중복 위촉될 수 없습니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기준에 맞는 인원을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사. 심의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민봉사과(☎032-440-2581~3, 2586)로 문의 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인천광역시 청원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table>
<tr><td>접수번호</td><td></td><td>위원회명</td><td colspan="4">인천광역시 청원심의회</td><td rowspan="3">사진
소명함판
(3㎝X4㎝)</td></tr>
<tr><td rowspan="2">성 명</td><td>(한글)</td><td></td><td rowspan="2">성별</td><td>남</td><td rowspan="2">생년월일</td><td rowspan="2"></td></tr>
<tr><td>(한자)</td><td></td><td>여</td></tr>
<tr><td rowspan="2">주 소</td><td colspan="7">(전화 :)</td></tr>
<tr><td>휴대전화</td><td></td><td colspan="2">E-mail</td><td colspan="3"></td></tr>
<tr><td>최종학력</td><td colspan="7">학교 학과 전공</td></tr>
<tr><td>현근무지
(직위표시)</td><td colspan="7">(전화 :)</td></tr>
<tr><td>주요경력</td><td colspan="7">◦
◦
◦
◦</td></tr>
<tr><td>자격사항</td><td colspan="7">◦
◦
◦
◦</td></tr>
<tr><td colspan="8">첨부서류: 1. 자기소개서 1부
2.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3. 개인정보 수집·활용·이용 동의서 1부</td></tr>
<tr><td colspan="8">위와 같이 작성하고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지원자 성 명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td></tr>
</table>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1.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2. 자택	주소 : (우편번호 :)					
3. 연락처	자택 : 근무처 : 휴대전화 :					
4. 근무처	근무처명		부서명		직위	
	주 소	(우편번호 :)				
5. 직업군	학교( ), 연구기관( ), 학회·협회( ), 사회단체( ) 기타(직책 및 업무:)					
6. 자격증	취 득 일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 . .					
	. . .					
	. . .					
	. . .					
7. 학력	학위취득일	학 교 명	학위 구분	졸업 구분	전공분야	
	. . .					
	. . .					
8. 전공분야		세부전공 ① ②				
9. 경력 현황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 업무경력		

10. 저서 및 논문	제출일	출판사 · 관련학회	논 문 명	주 요 내 용	참여자수

11. 인천시 각종 위원회 참여 현황	위원회명	임 기	비 고

12. 주요 실적	

<붙임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인천광역시는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위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연락처, 직업, 성별, 전화번호(휴대폰), 이메일, 주요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으로 「청원심의회」외부위원 위촉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인천광역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청원심의회」 운영 및 위원 위촉을 위한 기초자료

3. 개인정보의 제공

❍ 인천광역시는 수집된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청원심의회 위촉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명단 공개 시 성명, 직업이 공개될 수 있음)
  -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인천광역시의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위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 □	성명 : (서명)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45호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 및 연서대상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년 1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청구권자 주민총수			연서 주민수 (연서대상 주민총수의 1/200)
계	18세 이상 주민수(선거권 없는자 제외)		
	내국인	외국인	
2,550,235명	2,538,738명	11,497명	12,752명

(통계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내국인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선거권 없는자 제외)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선거권 없는자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440-24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46호

2023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및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인천광역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단위 : 명)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투표청구 주 민 수	청구인수 비 율
총 수	내국인수	외국인수		
2,553,078	2,538,738	14,340	127,654	1/20

○ 내국인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할 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외국인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할 군·구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18세 이상의 외국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2023년 1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48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인천광역시장 및 지역구 인천광역시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년 1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 인천광역시장

(2022. 12. 31 현재, 단위 : 명)

군구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서명인 수	최소 서명인 수	비고
	계	19세 이상 주민	19세 이상 등록 외국인			
계	2,523,162	2,511,723	11,439	252,317		
강 화 군	62,745	62,688	57		6,275	
옹 진 군	18,881	18,876	5		1,889	
중 구	129,078	128,012	1,066		12,908	
동 구	51,767	51,571	196		5,177	
미추홀구	354,731	352,916	1,815		25,232	
연 수 구	312,397	311,652	745		25,232	
남 동 구	430,457	428,881	1,576		25,232	
부 평 구	427,889	423,729	4,160		25,232	
계 양 구	252,082	251,567	515		25,209	
서 구	483,135	481,831	1,304		25,232	

○ 내국인 : 2022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외국인 : 2022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022. 12. 31 현재, 단위 : 명)

군구별	선거구별	읍면동	청구권자총수			서명인수	최소서명인수	비고
			계	19세 이상 주민	19세 이상 등록 외국인			
강화군	선 거 구	계	62,745	62,688	57	12,549		
		강 화 읍	19,412	19,377	35		628	5개 읍면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 필요
		선 원 면	6,900	6,897	3		628	
		불 은 면	4,711	4,710	1		628	
		길 상 면	6,663	6,656	7		628	
		화 도 면	4,250	4,249	1		628	
		양 도 면	3,960	3,958	2		628	
		내 가 면	2,883	2,883	-		577	
		하 점 면	3,827	3,825	2		628	
		양 사 면	1,773	1,773	-		355	
		송 해 면	3,036	3,031	5		608	
		교 동 면	2,667	2,667	-		534	
		삼 산 면	2,047	2,046	1		410	
		서 도 면	616	616	-		124	
옹진군	선 거 구	계	18,881	18,876	5	3,777		
		북 도 면	2,024	2,023	1		189	3개 면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 필요
		백 령 면	4,473	4,471	2		189	
		대 청 면	1,351	1,350	1		189	
		덕 적 면	1,804	1,804			189	
		영 흥 면	5,995	5,995			189	
		자 월 면	1,279	1,278	1		189	
		연 평 면	1,955	1,955			189	

군구별	선거구별	읍면동	청구권자총수			서명인수	최소서명인수	비고
			계	19세 이상 주민	19세 이상 등록 외국인			
중 구	제1선거구	계	40,341	39,568	773	8,069		
		연 안 동	5,350	5,313	37		404	3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신 포 동	4,428	4,270	158		404	
		신 흥 동	11,811	11,644	167		404	
		도 원 동	3,675	3,664	11		404	
		율 목 동	2,892	2,871	21		404	
		동인천동	5,305	5,227	78		404	
		개 항 동	6,880	6,579	301		404	
중 구	제2선거구	계	88,737	88,444	293	17,748		
		영 종 동	19,243	19,194	49		888	2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영종1동	34,670	34,527	143		888	
		운 서 동	31,235	31,146	89		888	
		용 유 동	3,589	3,577	12		718	
동 구	선 거 구	계	51,767	51,571	196	10,354		
		만 석 동	5,871	5,850	21		518	4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화수1.화평동	5,219	5,190	29		518	
		화수2동	6,703	6,670	33		518	
		송현1.2동	8,695	8,667	28		518	
		송현3동	3,058	3,046	12		518	
		송림1동	2,910	2,898	12		518	
		송림2동	2,041	2,039	2		409	
		송림3.5동	5,040	5,013	27		518	
		송림4동	5,083	5,073	10		518	
		송림6동	4,946	4,932	14		518	
		금 창 동	2,201	2,193	8		441	

군구별	선거구별	읍면동	청구권자총수			서명인수	최소서명인수	비고
			계	19세 이상 주민	19세 이상 등록 외국인			
미추홀구	제1선거구	계	83,818	83,275	543	16,764		
		도 화 1 동	19,627	19,440	187		839	2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도화2.3동	27,205	27,124	81		839	
		주 안 5 동	18,503	18,347	156		839	
		주 안 6 동	18,483	18,364	119		839	
미추홀구	제2선거구	계	85,672	85,210	462	17,135		
		주 안 1 동	19,163	18,926	237		857	2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주 안 2 동	14,726	14,654	72		857	
		주 안 3 동	7,628	7,604	24		857	
		주 안 4 동	15,204	15,163	41		857	
		주 안 7 동	11,067	11,029	38		857	
		주 안 8 동	17,884	17,834	50		857	
미추홀구	제3선거구	계	95,221	94,664	557	19,045		
		숭 의 2 동	12,804	12,690	114		953	3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숭의1.3동	13,941	13,843	98		953	
		숭 의 4 동	13,779	13,654	125		953	
		용현1.4동	16,322	16,270	52		953	
		용 현 2 동	15,291	15,185	106		953	
		용 현 3 동	6,935	6,900	35		953	
		학 익 2 동	16,149	16,122	27		953	
미추홀구	제4선거구	계	90,020	89,767	253	18,004		
		용 현 5 동	38,998	38,858	140		901	2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학 익 1 동	25,506	25,438	68		901	
		관 교 동	12,791	12,777	14		901	
		문 학 동	12,725	12,694	31		901	

군구별	선거구별	읍면동	청구권자총수			서명인수	최소서명인수	비고
			계	19세 이상 주민	19세 이상 등록 외국인			
연수구	제1선거구	계	55,140	54,956	184	11,028		
		옥련2동	16,741	16,713	28		552	1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 필요
		연수1동	16,557	16,462	95		552	
		청학동	21,842	21,781	61		552	
연수구	제2선거구	계	61,591	61,379	212	12,319		
		선학동	15,088	14,996	92		616	2개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 필요
		연수2동	18,091	18,019	72		616	
		연수3동	13,959	13,922	37		616	
		동춘3동	14,453	14,442	11		616	
연수구	제3선거구	계	51,915	51,828	87	10,383		
		옥련1동	16,176	16,143	33		520	1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 필요
		동춘1동	20,578	20,538	40		520	
		동춘2동	15,161	15,147	14		520	
연수구	제4선거구	계	67,400	67,290	110	13,480		
		송도1동	30,546	30,508	38		674	2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 필요
		송도3동	36,854	36,782	72		674	
연수구	제5선거구	계	76,351	76,199	152	15,271		
		송도2동	26,188	26,137	51		764	1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 필요
		송도4동	20,137	20,105	32		764	
		송도5동	30,026	29,957	69		764	

군구별	선거구별	읍면동	청구권자총수			서명인수	최소서명인수	비고
			계	19세 이상 주민	19세 이상 등록 외국인			
남동구	제1선거구	계	85,702	85,400	302	17,141		
		논현1동	25,953	25,879	74		858	1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논현2동	27,786	27,656	130		858	
		논현고잔동	31,963	31,865	98		858	
남동구	제2선거구	계	56,862	56,660	202	11,373		
		구월1동	25,505	25,437	68		569	1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구월4동	13,119	13,056	63		569	
		남촌도림동	18,238	18,167	71		569	
남동구	제3선거구	계	68,842	68,370	472	13,769		
		구월3동	27,394	27,192	202		689	1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간석1동	15,886	15,828	58		689	
		간석4동	25,562	25,350	212		689	
남동구	제4선거구	계	70,678	70,325	353	14,136		
		구월2동	28,169	28,127	42		707	1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간석2동	18,488	18,402	86		707	
		간석3동	24,021	23,796	225		707	
남동구	제5선거구	계	82,029	81,897	132	16,406		
		만수1동	15,078	15,048	30		821	2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만수6동	20,637	20,606	31		821	
		장수서창동	16,260	16,235	25		821	
		서창2동	30,054	30,008	46		821	
남동구	제6선거구	계	66,344	66,229	115	13,269		
		만수2동	20,186	20,154	32		664	2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만수3동	14,762	14,719	43		664	
		만수4동	17,495	17,482	13		664	
		만수5동	13,901	13,874	27		664	

군구별	선거구별	읍면동	청구권자총수			서명인수	최소서명인수	비고
			계	19세 이상 주민	19세 이상 등록 외국인			
부평구	제1선거구	계	64,926	63,644	1,282	12,986		
		부평1동	32,067	31,530	537		650	2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부평4동	32,859	32,114	745		650	
부평구	제2선거구	계	79,396	77,725	1,671	15,880		
		부평2동	13,218	12,905	313		794	2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부평5동	27,608	26,718	890		794	
		부평6동	13,103	12,779	324		794	
		부개1동	14,923	14,838	85		794	
		일신동	10,544	10,485	59		794	
부평구	제3선거구	계	86,399	85,818	581	17,280		
		부평3동	11,314	11,177	137		864	2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산곡3동	18,813	18,784	29		864	
		산곡4동	14,739	14,723	16		864	
		십정1동	21,207	21,128	79		864	
		십정2동	20,326	20,006	320		864	
부평구	제4선거구	계	73,262	72,923	339	14,653		
		산곡1동	12,194	12,165	29		733	2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산곡2동	24,909	24,881	28		733	
		청천1동	6,072	6,012	60		733	
		청천2동	30,087	29,865	222		733	
부평구	제5선거구	계	58,247	58,116	131	11,650		
		갈산1동	14,517	14,460	57		583	1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갈산2동	16,046	16,019	27		583	
		삼산1동	27,684	27,637	47		583	
부평구	제6선거구	계	65,659	65,503	156	13,132		
		삼산2동	22,821	22,802	19		657	1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부개2동	16,953	16,864	89		657	
		부개3동	25,885	25,837	48		657	

군구별	선거구별	읍면동	청구권자총수			서명인수	최소서명인수	비고
			계	19세 이상 주민	19세 이상 등록 외국인			
계양구	제1선거구	계	48,520	48,437	83	9,704		
		효성1동	23,816	23,774	42		486	2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효성2동	24,704	24,663	41		486	
계양구	제2선거구	계	69,492	69,353	139	13,899		
		작전1동	23,421	23,363	58		695	1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작전2동	17,154	17,115	39		695	
		작전서운동	28,917	28,875	42		695	
계양구	제3선거구	계	48,134	48,009	125	9,627		
		계산1동	17,238	17,184	54		482	1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계산2동	14,165	14,120	45		482	
		계산3동	16,731	16,705	26		482	
계양구	제4선거구	계	85,936	85,768	168	17,188		
		계산4동	19,391	19,375	16		860	2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계양1동	17,650	17,622	28		860	
		계양2동	28,807	28,727	80		860	
		계양3동	20,088	20,044	44		860	
서구	제1선거구	계	59,884	59,765	119	11,977		
		청라1동	23,533	23,478	55	4,707	599	2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청라2동	36,351	36,287	64	7,270	599	
서구	제2선거구	계	94,897	94,526	371	18,980		
		석남1동	19,571	19,462	109	3,914	949	3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 필요
		석남2동	11,339	11,279	60	2,268	949	
		석남3동	12,122	12,088	34	2,424	949	
		가좌1동	11,474	11,399	75	2,295	949	
		가좌2동	16,719	16,699	20	3,344	949	
		가좌3동	14,826	14,777	49	2,965	949	
		가좌4동	8,846	8,822	24	1,769	949	

군구별	선거구별	읍면동	청구권자총수			서명인수	최소서명인수	비고
			계	19세 이상 주민	19세 이상 등록 외국인			
서 구	제3선거구	계	68,909	68,772	137	13,782		
		가정1동	29,019	28,955	64	5,804	690	2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 필요
		가정2동	5,661	5,653	8	1,132	690	
		가정3동	8,391	8,371	20	1,678	690	
		신현원창동	25,838	25,793	45	5,168	690	
서 구	제4선거구	계	72,647	72,446	201	14,530		
		검암경서동	37,711	37,588	123	7,542	727	2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 필요
		연 희 동	34,936	34,858	78	6,987	727	
서 구	제5선거구	계	86,244	86,014	230	17,249		
		청라3동	25,640	25,581	59	5,128	863	2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 필요
		당 하 동	21,953	21,887	66	4,391	863	
		오류왕길동	20,767	20,693	74	4,153	863	
		마 전 동	17,884	17,853	31	3,577	863	
서 구	제6선거구	계	100,554	100,308	246	20,111		
		검 단 동	28,159	28,032	127	5,632	1,006	2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 필요
		불로대곡동	19,458	19,429	29	3,892	1,006	
		원 당 동	18,630	18,605	25	3,726	1,006	
		아 라 동	34,307	34,242	65	6,861	1,006	

1. 각 선거구별로 산정된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되, 각 선거구별 3분의 1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최소 서명인 수 : 읍·면·동별 청구권자 총수의 20%
(최대 관할 선거구 전체 청구권자 총수의 1%)

※ 다만, 선거구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2. 19세 이상 주민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함

3. 등록 외국인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를 말함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4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변경 사항 : 대표자

등록번호	단체명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2009-0- 인천광역시-17호	인천서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대표:이경임)	대표자	이경임	**김동석**	2023.1.6.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3-2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된 과적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 및 최고)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6.~2023.1.20.(15일간)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23년 1월 31일까지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

○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연번	부과번호	대상자	주민등록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 차량	체납본세	반송사유	비고
1	000191	신*보	강원도 원주시 삼광1길 16 (봉산동)	2022.3.22. 06:02	계양구 서운동 봉오대로 이동1반	폭0.18미터 초과(총폭2.68미터)	서울07 가8697	300,000	반송(폐문부재)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3-1호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9일

인천광역시장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의 집단에너지사업지역 및 사업범위 확장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의 집단에너지사업지역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의 사업범위를 정비함.(안 제4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에너지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번호 032-440-4343, 팩스번호 032-440-8662, 전자메일 jasminesy1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송도국제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을 “집단에너지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를 “시”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1호”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인천광역시”를 “시”로 한다.

4. 전기차 충전사업을 포함한 전기신사업 및 전기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송도국제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의 주요 사업,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집단에너지사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인천광역시가 출자한 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제3조(지분 출자) 인천광역시의 출자는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제3조(지분 출자) 시----------.
제4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4조(사업) ----------.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1호----------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제6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전기차 충전사업을 포함한 전기신사업 및 전기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5. ------- 제4호----------
5. 그 밖에 인천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 시----------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서>

제출자	조례 폐지안	찬·반 여부 및 사유 의견제출
○○○	○ ○ ○	○ ○ ○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3-2호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9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송 플랫폼 앱 이용이 정착됨에 따라 업무용 택시 카드 사용을 제한하여 이용을 투명하게 하고, 강화군·옹진군을 업무용 택시 이용 가능 근무지 범위에 포함시켜 직원들의 출장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용 택시 운송 플랫폼 앱 이용 방식을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업무용 택시 총괄부서 명칭 변경함.【안 제2조제3호】

다. 업무용 택시 근무지 범위에 강화·옹진군 포함.【안 제2조제7호】

라. 업무용 택시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서에 소방본부 추가함.【안 제3조】

마. 업무용 택시를 근무 시간 외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4조제3항 및 별표 1로 통일함.【제4조제3항제1호부터 8호까지 삭제】

바. 운송 플랫폼 회원가입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사. 업무용 택시 이용자에 동승자 포함.【안 제7조제2항】

아. 업무용 택시 이용요금의 정산 방식을 정비함.【안 제8조제1항】

자. 개정 규정에 맞게 별지 서식을 변경함.【업무용택시 이용관리대장】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택시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신관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번호 : 032-440-3806, 팩스번호 : 032-440-8669, 전자메일 : shoon0710@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정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1조 중 “업무수행 및 업무효율성”을 “공무 수행 및 업무 효율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업무상”을 “공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인천광역시 택시물류과”를 “택시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시의회”를 각각 “인천광역시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 “근무시간”이란”을 “ “근무 시간”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자기부담”을 “자기 부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업무상”을 “공무상”으로 한다.

2. “운송 플랫폼 앱”이라 함은 이용자가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하고 업무용택시 총괄 법인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방식의 플랫폼을 말한다.

7. “근무지 내”란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본문 중 “시의회”를 “인천광역시 의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종합건설본부”를 “종합건설본부 및 소방본부”로, “해당 출장소, 사업소에서”를 “자체적으로”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이용기준)”을 “(이용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업무수행”을 “공무 수행”으로, “KTX역간”을 “KTX 역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무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결제시간”을 “결제 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8호의 경우에는”을 “별표 1의 경우”로 , “해당부서”를 “해당 부서”

로, 같은 조 제5항 중 “중형택시”를 “중형 택시”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업무분장 내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별표 1의 기타 예외적인 이용 및 예시에 해당하는 경우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업무용택시를 이용 후 소명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이용절차)”를 “(이용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회원 가입을 위해 각 부서 담당자는 업무용택시 총괄부서의 담당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요청해야 한다.

② 각 부서 담당자는 운송 플랫폼 앱에 직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업무용택시 이용자는 운송 플랫폼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한다.

③ 업무용택시 이용자는 이용내역을 별지 서식의 업무용택시 이용관리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예산의”를 “예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부서”를 “해당 부서”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7조(종전의 제8조)제2항 중 “이용할 경우에는”을 “이용하는 자(동승자 포함)는”으로 하고, “때에”를 “때”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정산 결제”를 “정산하여 업무용택시 결제 전용 계좌로 지불”로, “다음달”을 “다음 달”로, “업무용 택시”를 “업무용 택시”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이용제한)”을 “(이용 제한)”으로 하고, 제2항 중 “소속부서”를 “소속 부서”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속한 업무 수행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업무용 택시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무 수행 및 업무 효율성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이하 “업무용택시”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공무원이 업무상 필요로 인하여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업무용택시 카드”란 업무용택시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인천광역시 업무택시 운영·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로 인천광역시 택시물류과를 말한다. 단,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는 해당 사업소(출장소)에서 업무택시 총괄부서를 지정한다.	제2조(정의) ----------. 1. ---------- 공무상 ----------. 2. “운송 플랫폼 앱”이라 함은 이용자가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하고 업무용택시 총괄 법인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방식의 플랫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업무용택시 운영·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로 택시정책과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4. “각 부서”란 인천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시의회의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4. ---------- 인천광역시 의회----------.
5. “이용자”란 인천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시의회 직원으로서 업무용택시를 이용한 자를 말한다.	5. ---------- 인천광역시 의회----------.
6. “근무시간”이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말한다.	6. “근무 시간” ----------.
7. “근무지 내”란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을 말한다.	7. “근무지 내”란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을 말한다.
8. “개인지불”이란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자기부담으로 직접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8. ---------- 자기 부담 ----------.
9. “소명자료”란 출장복명서, 방침서 등 업무상 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9. ---------- 공무상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업무용택시 제도를 운영하는 인천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시의회에 적용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	제3조(적용 범위) ---------- 인천광역시 의회 ----------

현 행	개 정 안
본부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출장소, 사업소에서 운영한다.	-- 종합건설본부 및 소방본부는 ---------- 자체적으로 --------.
제4조(이용기준) ① 업무용택시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지 내 및 근무지와 광명 KTX역간 왕래하는 때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업무용택시는 근무시간 중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택시 이용요금 결제시간이 09:00부터 19:00까지 해당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부서장의 책임 하에 업무용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후 소명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정관련 행사 및 의전지원 2. 각종 회의 준비 또는 회의참석 3. 업무 관련 시장조사, 물품 및 서류 등의 구매·운반·전달·재배	제4조(이용 기준) ① --------- -- 공무 수행 ---------- KTX 역간 ----------. ② ---------- 근무 시간 ---------- 결제 시간 ---------- 근무 시간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업무분장 내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별표 1의 기타 예외적인 이용 및 예시에 해당하는 경우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업무용택시를 이용 후 소명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치 4. 공공기관이나 유관단체와의 업무협의 및 주민 설명회 등에 참여 5. 시유재산이나 각종 시설물 등의 점검 6. 각종 민원현장, 집회 및 시위 등 현장대응 및 민원응대 7. 지진, 화재, 수해, 폭설 등 재난현장 출동 및 대응 등 긴급재난 8. 별표 1의 기타 예외적인 이용 및 예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부서의 장이 업무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제3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⑤ 업무용택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형택시로 한정한다.	④ 별표 1의 경우 해당 부서 ----------. ⑤ ---------- 중형 택시로 ----.
제5조(이용절차) ① 각 부서의 업무용택시 담당자는 공용법인카드가 등록된 업무용택시 호출 시스템인 운송플랫폼 서비스에 직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업무용택시	제5조(이용 절차) ① 회원가입을 위해 각 부서 담당자는 업무용택시 총괄부서의 담당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요청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이용자는 운송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한다. ② 운송플랫폼을 통한 업무용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용택시 카드를 받아 콜배차 및 노상탑승 등의 방법으로 업무용택시를 이용하여야 하며, 업무용택시 카드로 결제한 이용내역을 별지 서식의 업무용 택시 이용관리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 담당자는 운송 플랫폼 앱에 직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업무용택시 이용자는 운송 플랫폼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한다.
<신 설>	③ 업무용택시 이용자는 이용내역을 별지 서식의 업무용택시 이용관리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인천광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용택시 제도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용택시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을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 예산의 ----------.
② 각 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부서의 업무용택시 이용 현황을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② ---------- 해당 부서의 ----------.
제7조(업무용택시 카드 관리)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업무용택시 카드는 총괄부서에서 관리한다.	
제8조(여비) ① (생 략) ② 업무용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출장 신청할 때에 공용차량 사용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공용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용하는 자(동승자 포함)는 ------- 때 ----------.
제9조(이용요금의 정산) ① 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월의 이용요금을 다음달 23일까지 정산 결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각 부서의 담당자는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서식의 업무용 택시 이용관리대장을 총괄부서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요금의 정산) ① ---------- 다음 달 ------- 정산하여 업무용택시 결제 전용 계좌로 지불 ---------.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음 달 ---------- 업무용택시 ----------.
제10조(이용제한) ① (생 략)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소속부서에 기간을 정하여 업무용택시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9조(이용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소속 부서 ----------.

[별지 서식]

업무용택시 이용관리대장(○○과, ○○담당관)

연번	이용일시	행 선 지		용무	이용요금	출장자		동승자		사전협의여부 (O, X)
		출발	도착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3-3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9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종전 조례 부칙 제3조제4항에 의해 2022. 2. 1. 부터 양도·양수 및 전대가 금지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사용자 등은 사용·수익허가 취소(계약해지) 대상으로

나. 최소한의 대안없이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상권의 침체 및 기능 상실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고, 코로나 19의 장기화 및 3고(물가, 금리, 환율)로 침체된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보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조례 개정으로 임·전차인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그동안 위법한 여건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여 지하도상가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방안 신설**(안 제3조의2제1항)

- 임·전차인 당사자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임차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 포기 후 해당 점포를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방안 신설**(안 제3조의2제2항)

-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점포 반환 후 잔여 점포(공실)의 사용· 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사용·수익 허가 기간 등 신설**(안 제3조의2제3항)

- 지하도상가 사용·수익 허가 기간 및 갱신 횟수 명시

라. **적용례 및 일몰 규정 신설**(안 부칙 제2조)

- 2022년 2월 14일까지 관리수탁자로부터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한 자에 한하여 적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소상공인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14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정소영 주무관(전화번호: 032-440-3732, 032-440-8692, 전자메일: symanse81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용·수익허가의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전대차를 승인받은 자들의 혼란 최소화, 지하도상가의 상권 기능 상실과 사회갈등의 방지를 위하여 사용자가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와 당사자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사용·수익허가 받은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포를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에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점포 반환 후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해당 지하도상가의 잔여 점포를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관리수탁자의 잔여 관리위탁기간을 넘지 못한다.

부 칙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수익허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4일까지 관리수탁자로부터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사용·수익허가의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전대차를 승인받은 자들의 혼란 최소화, 지하도상가의 상권 기능 상실과 사회갈등의 방지를 위하여 사용자가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와 당사자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사용·수익허가 받은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포를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에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점포 반환 후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해당 지하도상가의 잔여 점포를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이 기간은 관리수탁자의 잔여 관리 위탁기간을 넘지 못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수익허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4일까지 관리수탁자로부터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⑤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하도상가 임·전차인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장 홍 창 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서>

제출자	조례 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의견제출
○○○	○ ○ ○	○ ○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3-2호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오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오존의 위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인천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나. 예보 및 경보 대상 오염물질에 오존 추가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안 제9조)

다.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에 오존을 추가(별표 1)

라.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에 오존을 추가(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3, 팩스 440-8765, 이메일 wjddlswwk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미세먼지로”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로, “주민”을 “시민”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대기오염”으로 하며, “미세먼지”를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미세먼지란”을 “미세먼지 및 오존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나목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하며,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오존: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무색무미의 자극성 있는 기체

제2조제2호 중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오존”으로 하고,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하고, “주민”을 “시민”으로 하며, “말하며,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구분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미세먼지(PM-10, PM-2.5) ”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하고,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한다.

제3조 중 “미세먼지”를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하고, “주민”을 “시민”으로 하며, “대응조치”를 “대응”으로 한다.

제4조 중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한다.

제5조와 제7조 중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하고,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하고, “미세먼지를”을 “미세먼지 및 오존을”로 한다.

제11조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시민 ----------, 대기오염 ---------- 미세먼지와 오존 ---------- ---------.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1. "미세먼지 및 오존"이란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신 설>	다. 오존: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무색무미의 자극성 있는 기체
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참작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 미세먼지, 오존 ---------- 미세먼지, 오존 ----------시민----------

3. “경보”란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며,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구분한다.	3. ---- 미세먼지 및 오존 ----------시민----------시민---------- 말한다.
4.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6. “미세먼지 및 오존 ----------미세먼지 및 오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건강상 조치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미세먼지와 오존 ----------시민---------- 미세먼지와 오존 ----------.
② 주민은 시와 군·구가 시행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 미세먼지와 오존----대응----------.

제4조(예보의 내용과 기준)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과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예보의 내용과 기준) 미세먼지 및 오존 ----------.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미세먼지 예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 미세먼지 및 오존 ---------- 미세먼지 및 오존 ----------.
1. 별표 1의 나쁨이 예보되는 경우에는 주민에게 차량운행 자제, 노인·어린이 등에게 야외활동 자제 권고	1. ----------시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경보 대상지역) ① (생 략)	제6조(경보 대상지역)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미세먼지 및 오존 ----------.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시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그 발령 기준 및 해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다.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미세먼지 및 오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주민이 미세먼지 농	③ ------시민- 미세먼지 및

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오존 ----------.
제9조(미세먼지 저감 노력) 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긴급한 경우 외에는 그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미세먼지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 노력) ① ---------- 미세먼지 및 오존 ----------.
②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의 운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미세먼지 및 오존을 ----------미세먼지 및 오존 ----------.
제11조(시·도간 협력) 시장은 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시·도간 협력) ----------시민----------.

별지

[별표 1]

예보의 내용 및 기준(제4조 관련)

가. 미세먼지

(단위 : ㎍/㎥)

예보내용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예보물질	미세먼지(PM-10)	0 ~ 30	31 ~ 80	81 ~ 150	151 이상
	초미세먼지(PM-2.5)	0 ~ 15	16 ~ 35	36 ~ 75	76 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활동(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

※ 민감군: 어린이, 노인, 호흡기·심장질환자 등

※ 예측·발표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오존

(단위 : ppm)

예보내용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예보 물질	오존	0 ~ 0.030	0.031 ~ 0.090	0.091 ~ 0.150	0.151 이상
행동 요령	민감군	-	실외활동 시 행동 제약은 불필요하나 몸상태에 따라 유의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으면 실외활동 피해야 함	실외 활동 제한, 실내생활 권고

※ 민감군: 어린이, 노인, 호흡기・심장질환자 등

※ 예측・발표 기간은 매년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한다.

[별표 2]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8조제1항 관련)

가. 미세먼지

경보단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가. 민감군(어린이,임산부,노인,호흡기·심장질환자)은 실외 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권고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가. 민감군(어린이·임산부·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명령 아.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나. 오존

경보단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가.민감군(어린이,노인,호흡기·심장질환자 등)은 실외활동 자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 다.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마.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 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바.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자동차 운행 자제 나.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그 밖에 오존 원인물질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가.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제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다. 유치원·각급 학교는 야외활동 및 실외수업 제한 권고 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마.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바.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자동차 운행 제한 나.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다. 그 밖에 오존 원인물질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대경보	가.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금지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금지 다. 유치원·각급학교는 야외활동 금지 및 하교시간을 조정하고,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에게 조기 귀가·진료 등 특별관리 실시 라.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차량 통행 금지 나.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다. 그 밖에 오존 원인물질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관계 법령 및 발췌 사항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 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예측·발표의 기준 및 내용 등 대기오염도의 예측·발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1.7.21.>

②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4(대기오염도 예측 · 발표 대상 등)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7.26.>

1. 대기오염의 정도
2. 인구
3. 지형 및 기상 특성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9.2.8.>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오존(O3)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기준과 내용은 오염의 정도 및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 예측·발표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 1. 31., 2014. 2. 5., 2016. 7. 26.>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2. 7. 20., 2014. 2. 5., 2019. 2. 8.>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오존(O3)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
2.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3. 오존(O3):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 31., 2014. 2. 5.>

1. 주의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2. 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3. 중대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 4 제3항의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기준과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측·발표의 기준

가.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 등급으로 발표한다. 대상오염물질 별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예측·발표의 등급 기준 >

물질	단위	농도산정 시간기준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PM10	㎍/㎥	24시간	0～30	31～80	81～150	151 이상
PM2.5	㎍/㎥	24시간	0～15	16～35	36～75	76 이상
O3	ppb	1시간	0～30	31～90	91～150	151 이상

나. 예측·발표의 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단, O3은 매년 4.15일부터 10.15일까지로 한다.)

2. 예측·발표의 내용 : 예측되는 대기오염도 등급(단, PM10과 PM2.5 중 더 높은 예보 등급을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으로 발표) 및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국민 행동요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오존 경보 발령 및 해제 시 문자 전송비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오존 경보 발령 및 해제 시 문자 전송비가 발생하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대기보전과 대기개선팀장 이정은

환경국 대기보전과장 김달호